



2021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컨퍼런스



자료집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제도 및 현황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2021.12. 1.



CONTENTS

- ✓ 공공데이터법
-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제도 소개
-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현황 및 성과



I 공공데이터법

제정목적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화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내용

- | 기본원칙 | 국민에게는 이용권 보장, 기관에게는 제공의무 부여
- | 전략위원회 | 총리소속, 기본계획 수립 및 제공대상 심의/의결
- | 기본계획/실태평가 |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 평가
- | 제공책임관/지원센터 | 기관마다 업무총괄 지정,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
- | 제공/기반 구축 | 개방 목록 관리, 포털 운영, 품질정비, 표준화
- | 분쟁조정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 보칙 | 제공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 관련 공무원 면책

[공공데이터법]
6장40조로구성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국무총리, 민간 공동 위원장
공공데이터 관련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 및 추진 사항을 점검·평가
- **행정안전부(주무부처) :**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및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NIA):**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각 기관의 책임자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또는 중단
문제 발생 시 해결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② 자유롭게 이용(법령이나 이용조건 준수,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

정보 공개와 데이터 제공 비교

정보 공개 (정보공개법)

국민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참여, 투명성 확보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매체에 기록된 사항

목적

대상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발전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제17조)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공표하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함(제19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음(제3조)

공공데이터 정의

-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
- 공공기관이 법령, 직무상 목적을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예: 지리, 기상·해양·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레저, 농림·수산업, 범죄,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문화정보 등

공공데이터 제공방식

-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3호, 4호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함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

제공 제외대상

-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각호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
- 제3자 권리(저작권 등)가 포함된 것으로서, 제3자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

● 기본원칙

-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해야 함 (제3조제5항)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음(제28조)
 - 이용자가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

-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해당 공공기관과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36조제1항)
 - ✓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중대과실 제외), 목록 제외(시스템 폐지, 법개정 등), 제공 중단(제28조 사유)
 - ✓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 중단 등
-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함 (제36조제2항)

● 이용자

-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되어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36조제3항)
 - * 단,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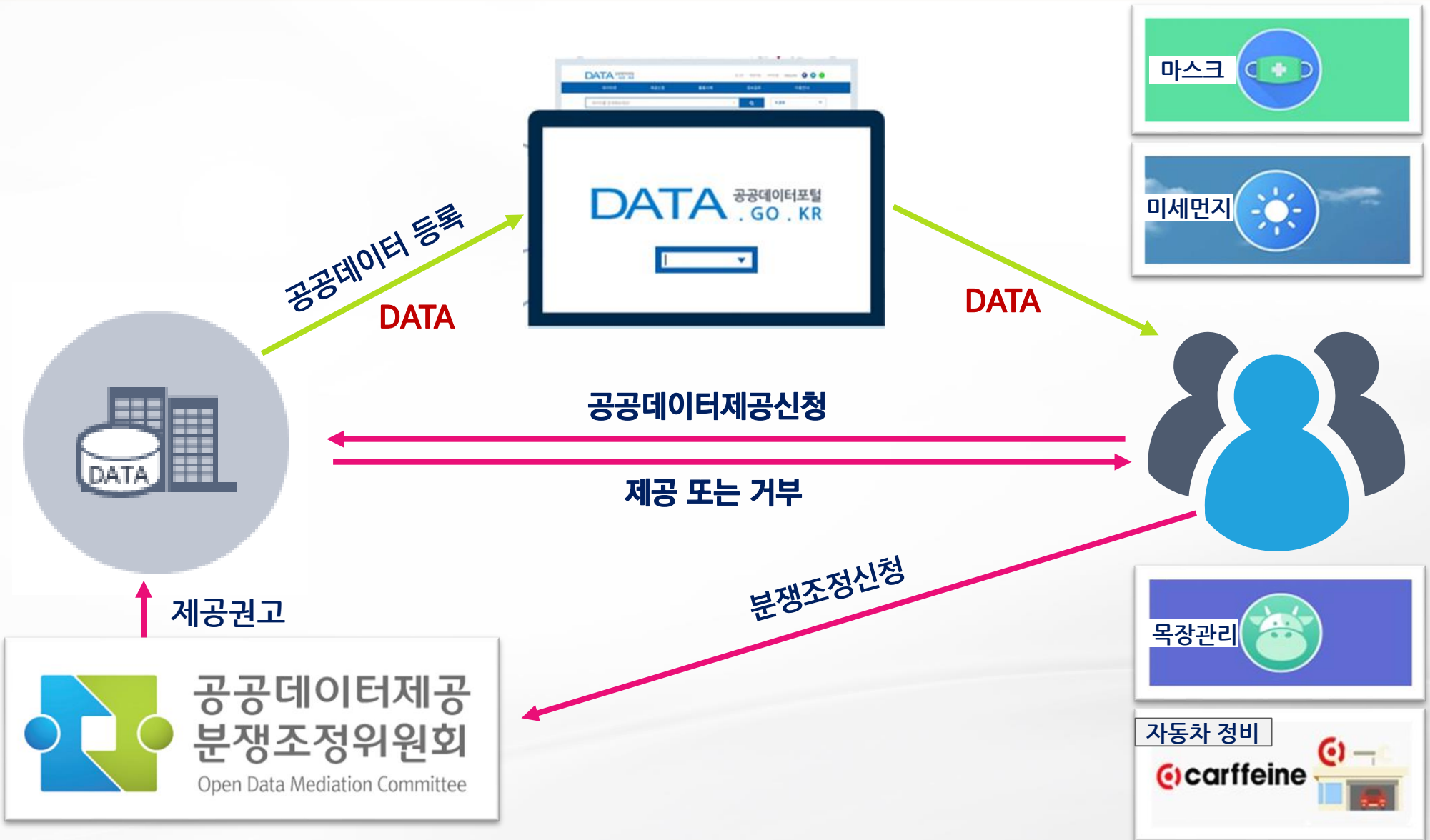
II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제도 소개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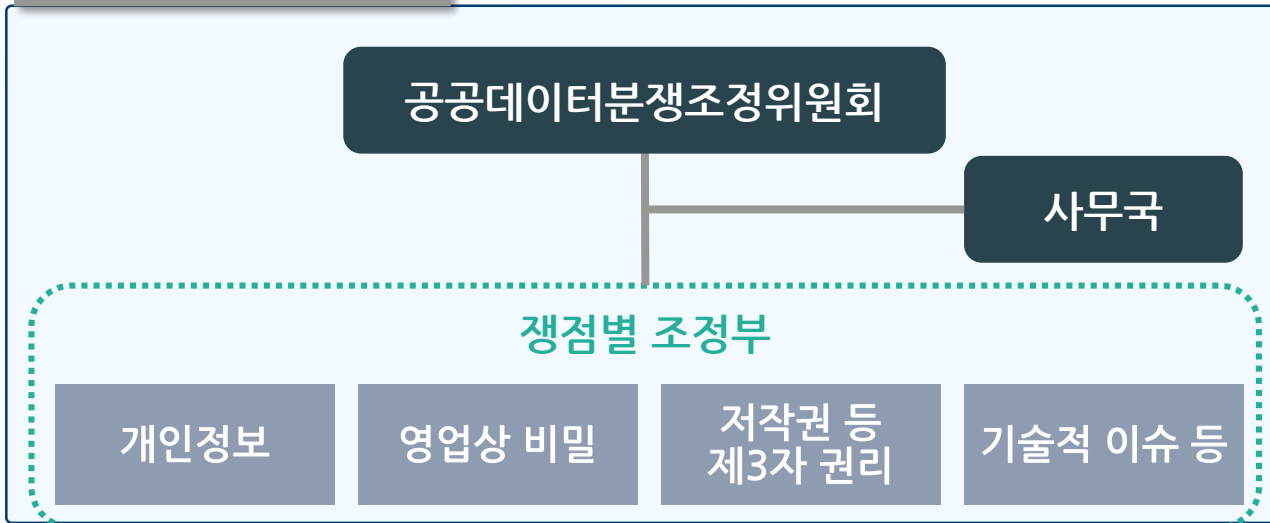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로 데이터 이용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진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나 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2013년 12월~)



위원회 조직



위원회 구성

- ▷ 소속 :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 ▷ 구성 : 위원장 포함 총 25명
-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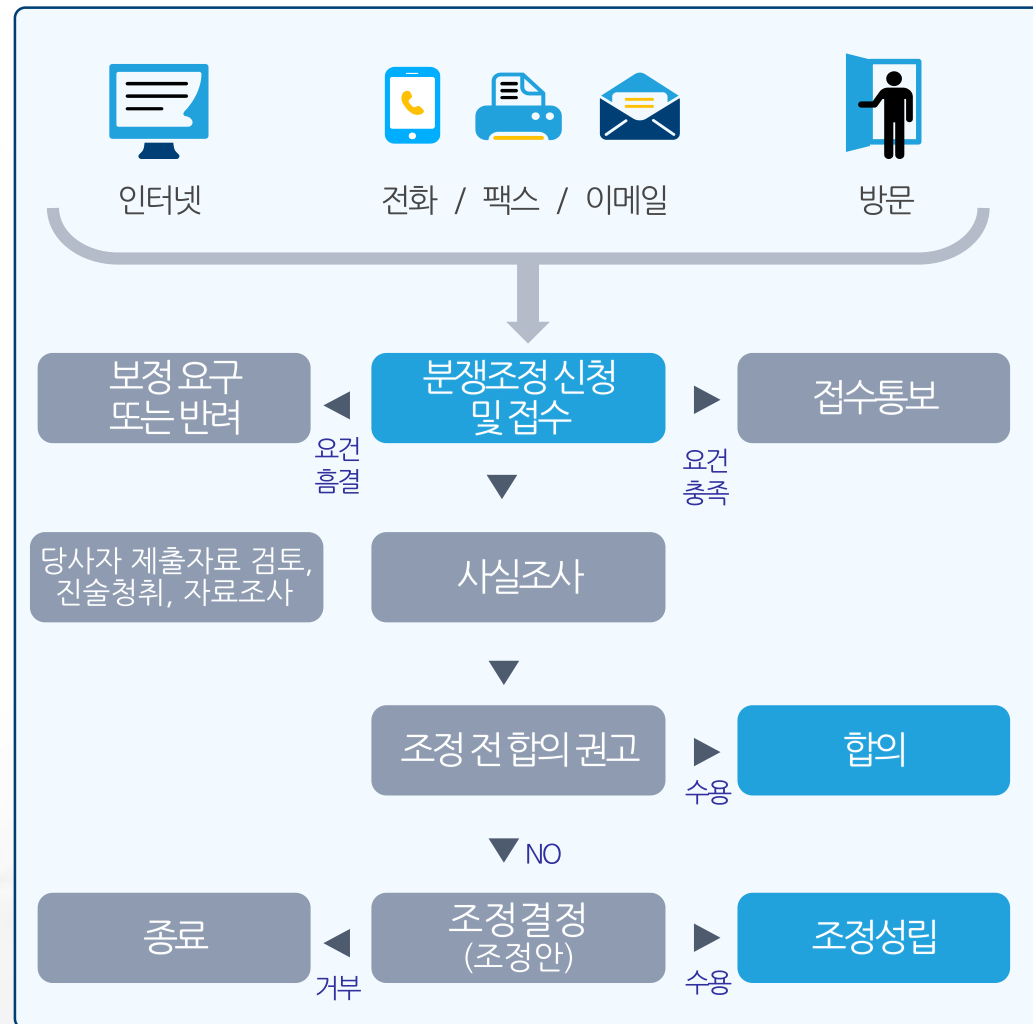
위원회 운영

- ▷ 위원회(전체) : 분쟁조정 처리결과 보고 등
- ▷ 조정부 : 4개 쟁점별 5~7인으로 구성하여 분쟁조정 사건 심의·의결
- ▷ 소위원회 : 분쟁조정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위원회 업무 관련 쟁점을 집중 검토
- ▷ 사무국 : 사실조사, 사건조사보고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 전반을 지원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공공데이터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분쟁조정절차 진행 (조정처리기간: 30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여부 결정



특징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나,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조정대상이 행정청의 처분이 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

위원회 조정에 따른 경우 법적책임이 면제되므로
법적 부담없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이 가능

법적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법 제32조9항)

국민은 조정 결정의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가 있음 (법 제32조제7항)

위원회 조정에 따르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법 제32조제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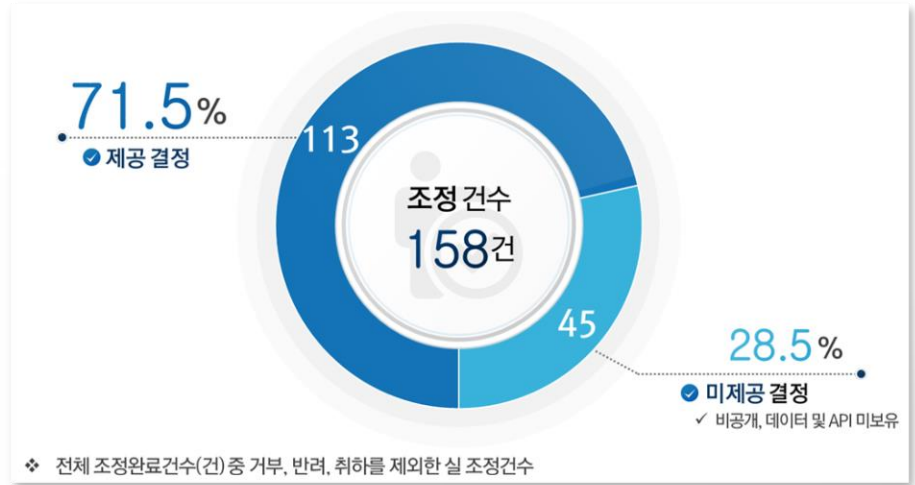


III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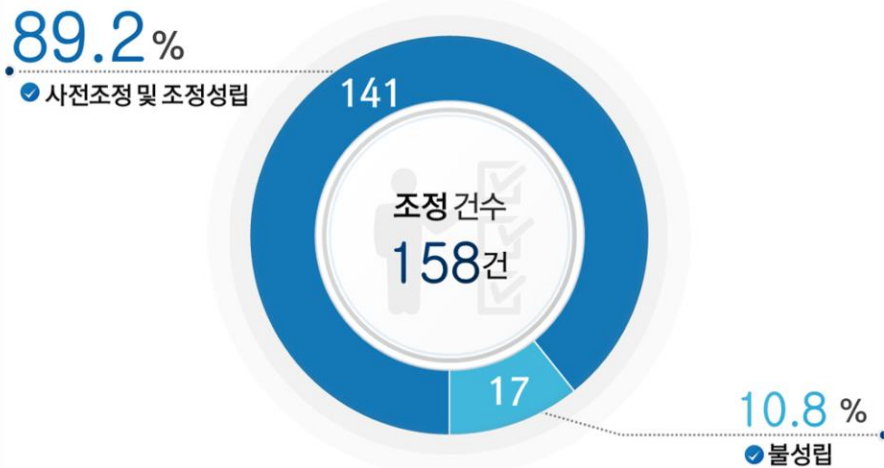
조정신청처리결과



조정결정 내용



조정성립 현황



조정안 불수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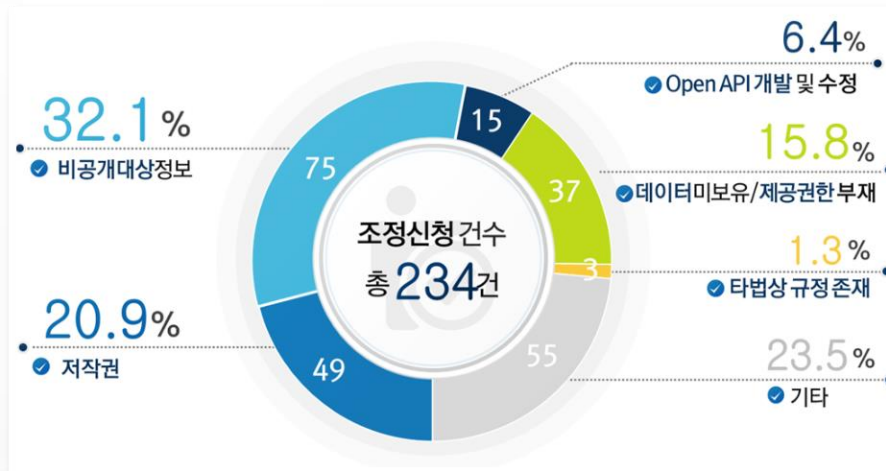
데이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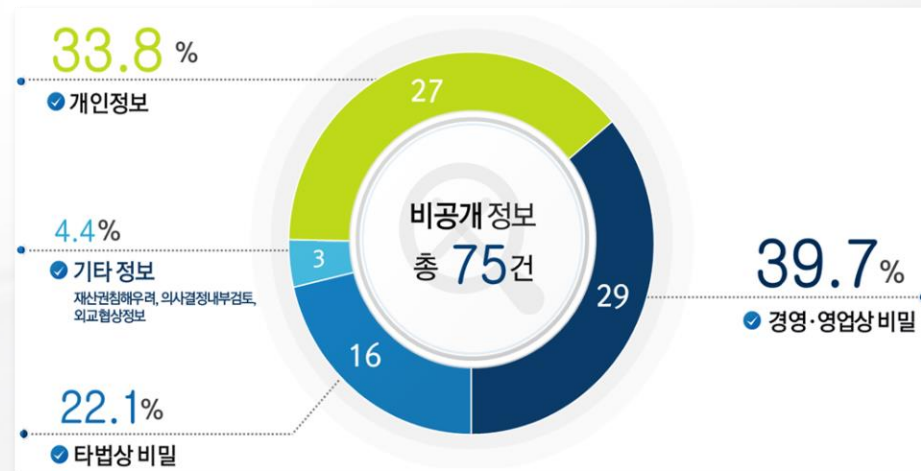
데이터 내용



주요 쟁점



비공개정보 쟁점



-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조정결과의 약 70%, 조정성립율 약 90%)**
 - 정보제공서비스(자동차, 특허·논문 데이터, 문화유물 3D스캔데이터)
 - 네비게이션 서비스(도로 이정표 데이터), 목장관리앱서비스(축산물 데이터)
 - 공공데이터 분석 연구(국민연금데이터, 의약품처방데이터 등)
- **공공데이터정책 소관 부처, 공공기관과의 협력**
 - 분쟁조정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공공데이터관리지침, 개방표준 등에 반영
 - * 공공데이터 제공주체, 가공범위 등에 관한 해석(관리지침), 전국 자동차정비업체 데이터 개방항목(표준)
 - 공공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사업과 연계
 - * 열차승차권 이용/반환 데이터 제공(API), 정보주체 동의사실 인증 등
- **공공기관과 이용자의 소통창구 제공**
 - 일방적 조정결정이 아니라 조정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대화하여 공공기관이 실제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 개방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성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이슈

- 마이데이터적 접근방식과 비식별화조치를 중심으로

전응준(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2021. 12. 1.



Contents

1. 공공데이터 제공 요건

1.1 공공데이터의 정의

1.2 공공데이터 제공 요건

2. 비식별조치 후 제공

2.1 쟁점

2.2 요건

2.3 분쟁조정 사례

2.4 과제

3. 마이데이터적 접근

3.1 마이데이터의 개념

3.2 마이데이터 제도의 배경

3.3 분쟁조정 사례

3.4 과제

1.1 공공데이터의 정의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 원칙적으로 오픈포맷이어야 함(CSV, JSON, XML, RDF, LOD 등)

1.1 공공데이터의 정의

○ 정보공개법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데이터기반행정법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호)

1.1 공공데이터의 정의

- 관련 법률에서 정의된 데이터 내지 정보 개념의 특징
 - ①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기록매체의 형태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
 - ② 기계판독이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

-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의 의미
 -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의 의미에 대해 공식 문서에서 이를 설명한 예는 찾기 어려우나, 실무에서는 '광(光)으로 처리된 자료'는 CD, DVD 등의 광학매체(적외선 레이저에 의해 판독되기 때문에 광학매체라고 함)에 있는 자료로 해석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된 매체인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메모리(USB 형태 포함)에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임

1.2 공공데이터 제공 요건

○ 원칙적 공개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공공데이터 제공 요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1996년 법률	2004년 법률	2020년 개정법률
<p>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p>	<p>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p>	<p>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p>

1.2 공공데이터 제공 요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후단의 각호 사유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2 공공데이터 제공 요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의미

- 개인정보성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관한 문제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정보공개법(2004년 개정법률)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1996년 법률)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 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1.2 공공데이터 제공 요건

【별개의견】

정보공개법(2004년 개정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 정보공개법(1996년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새기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문언뿐 아니라 개정 경위 및 취지,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한 견해,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두루 부합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1.2 공공데이터 제공 요건

- 위 판결 선고문 및 재판연구관의 평석에 따르면 위 대법원 다수의견은 구 정보공개법상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식별정보’로 약칭하고 있음(판결문 내용에는 잘 나타나지 않음).¹⁾
-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정의견은 구법상의 표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더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도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고 있음. 이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넓은 범위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해석됨.**
-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의 별개의견(소수의견)은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표현하고 있음. 다만, **위 별개의견은, 신,구법상의 제7조제1항 제6호 본문은 표현만을 달리할 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있음**

1) 이완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 평석, 사법발전재단, 2012

1.2 공공데이터 제공 요건

- 반면 정보공개법(2004년 법률)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 제9조 제1항 제6호에 관하여 종전 비공개대상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축소하는 등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어(구법 대비 비공개 사유를 축소함), 입법취지, 위 대법원의 다수의견, 별개의견이 서로 상이함
- 2020년 개정법은 이와 같은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대상 정보가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함²⁾

2) 국회 심사보고서 5면

2.1 쟁점

-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의미하는바, 공공데이터법상 개인정보성 데이터를 가명처리(비식별처리)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됨
- 법률요건상으로는 가명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2.2 요건

○ 가명처리(비식별조치)³⁾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추가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매핑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

- 식별자(identifiers)는 원칙적으로 삭제하여야 하나 데이터 이용목적상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조치 후 이용
- 속성값(attribute value)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도 있으므로 데이터 이용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이용목적과 관련이 있는 속성값 중 식별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비식별조치 후 이용

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2021.1 참고

2.2 요건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 공공기관은 추가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른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신청인에게 이용조건 부과

-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 ① 신청인이 '추가 정보' 내지 '다른 정보'를 확보하여 가명정보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규범적 의무를 부과하고(재식별금지의무) ② 가명정보의 활용 환경, 재식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제3자에게 재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③ 민감정보 처리 등 필요한 경우 폐쇄적 공간(안심구역)에서 공공데이터를 이용·처리하도록 함
- 불특정 제3자(인터넷 공개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익명정보로 처리하여야 하므로(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형태로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 재제공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2.3 분쟁조정 사례

○ 018-012 화재발생지 데이터(소방청)

- 신청데이터: 200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화재발생지(세부지번, 아파트 동, 호수를 포함한 상세지번) 및 화재개요
- 신청목적: 데이터 분석 및 언론 기획보도
- 화재개요는 화재조사관이 특정 화재사고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으로서, 화재일시·발화지점·최초 목격자 진술, 현장조사 시 특이점 등이 포함되며 목격자 이름, 나이, 전화번호, 발화대상 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

2.3 분쟁조정 사례

- 조정결정

이 사건 데이터는 그대로 개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비식별처리를 하여 데이터를 제공함

-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데이터와 관련하여,
 - 현재 피신청인이 제공중인 주소데이터에 공동주택의 '건물명(예:OO 아파트) 및 동 데이터(예: 101동)'을 추가하여 제공함
 - 공동주택의 호수 및 단독주택의 지번은 일련번호로 치환하여 제공
- 화재개요 데이터와 관련하여,
 - 신청인이 지정하는 1,000 ~ 2,000건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여 제공하고, 삭제 등 가공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2.3 분쟁조정 사례

- 조정결정

-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공공데이터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용조건 부과
 - 신청인은 언론보도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별 화재지를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됨
 -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함

2.4 과제

-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정보공개법) 간의 정합성
 -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의 처리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데이터 이용목적의 제한이 없는(영리적 목적 가능) 공공데이터 제공에서도 가명정보 형태의 공공데이터 제공한지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음
 -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처리, 산업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공공데이터법은 개인정보성 데이터 제공에 관하여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법 제17조), 원칙적으로 데이터 제공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 분쟁조정이라는 형식을 활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데이터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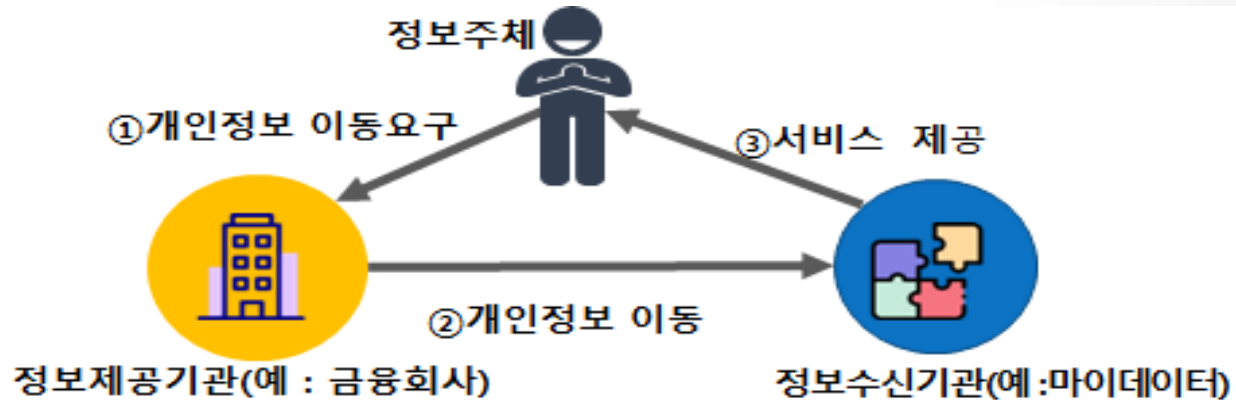
2.4 과제

○ 신청인에 대한 적절한 이용조건의 부과

- 행정법상 부관부 행정행위에 해당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은 제공거부처분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 분쟁해결(ADR)로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인과 공공기관의 협업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재식별금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데이터 재제공금지, 이용환경의 설정, 이용행위에 대한 감독권 유보, 법률적 책임 확인 등의 유효적절한 이용조건을 고민하여야 함

3.1 마이데이터의 개념

○ 실체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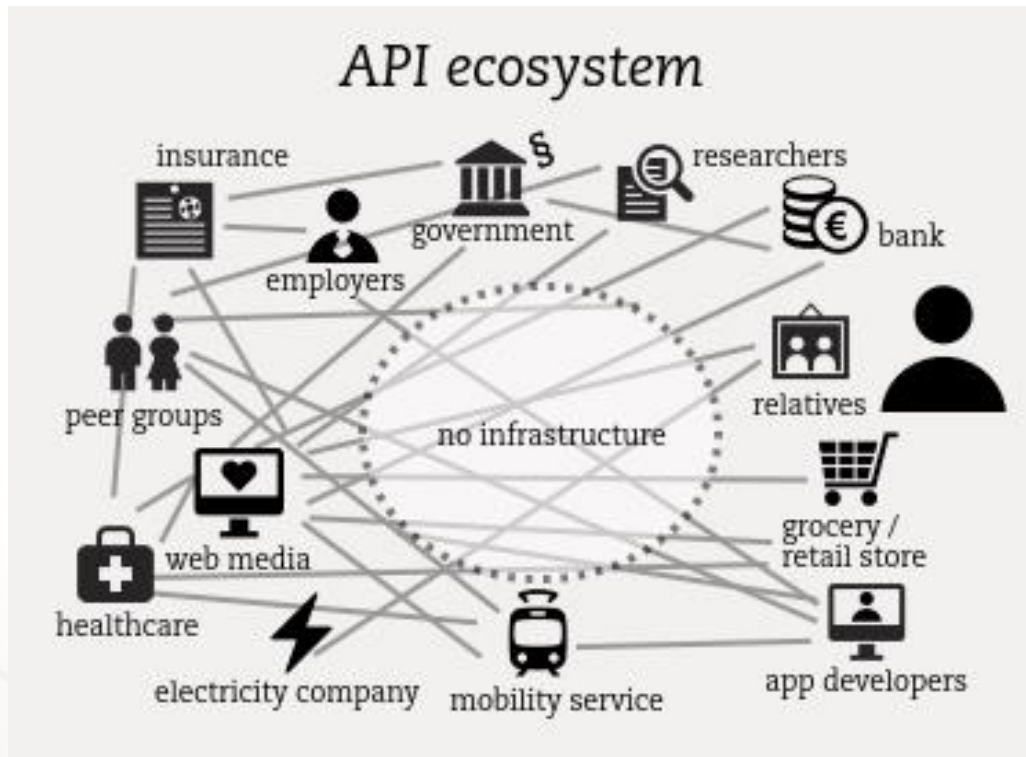
-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임
-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①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정하고(동의권, 열람권, 정정권, 처리정지, 파기삭제권) ② 정보주체에 대한 제3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설정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규범에 대해서는 의무조항, 벌칙규정 등을 통해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실행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조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이념적 목적이 있음

3.1 마이데이터의 개념

○ 개인데이터 생태계적 관점

- API 에코시스템

- API는 유의미한 수단이나 복잡한 API 연결의 경우 모든 API를 관리하기 어렵고 정보주체도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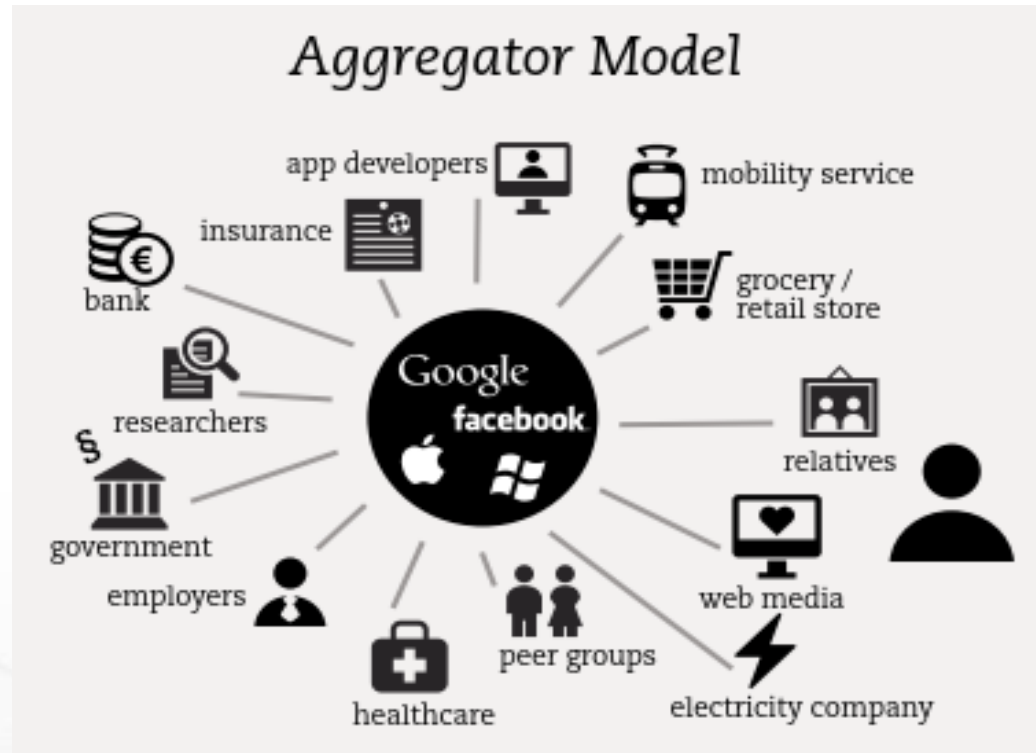


3.1 마이데이터의 개념

○ 개인데이터 생태계적 관점

- Aggregator 모델

-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중심의 상호운영성은 확보되나 플랫폼간의 데이터 공유는 불가능하여 플랫폼 lock-in 효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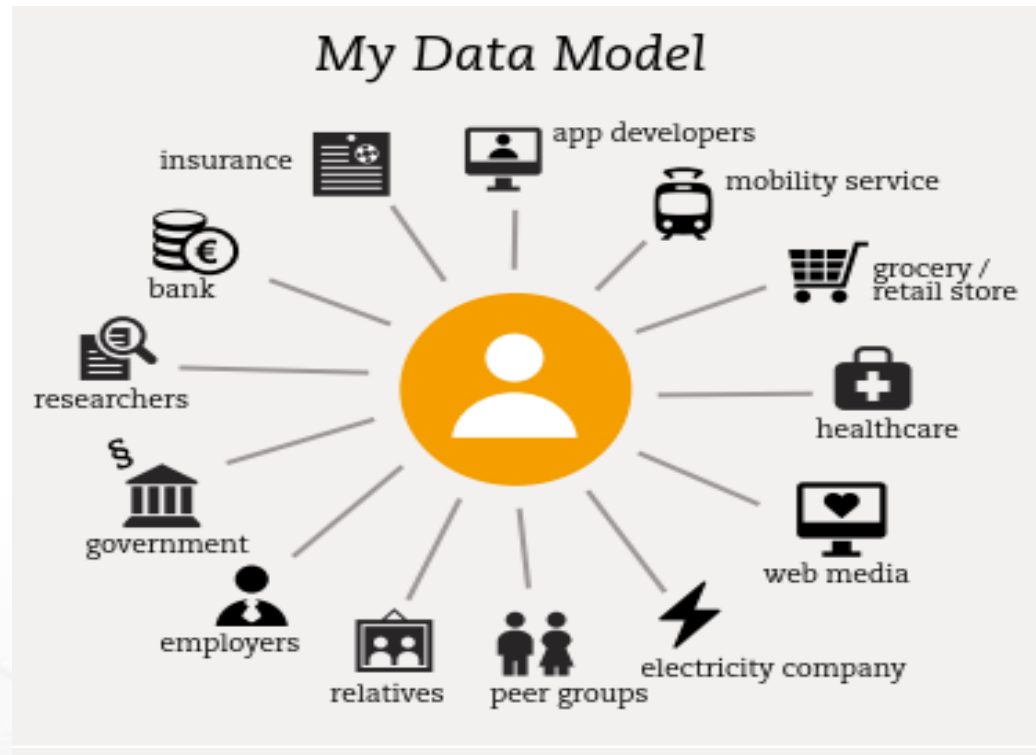


3.1 마이데이터의 개념

○ 개인데이터 생태계적 관점

- 마이데이터 모델

- 본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념적 우월함. 다만 데이터의 기술적 표준과 상호운영성 확보가 문제됨



3.2 마이데이터 제도의 배경

○ 관련 법제도

- EU의 GDPR의 제20조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 다운로드 권리를 주된 권리로 규정하고, 전송요구권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인정
-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의 정보접근권(Right to access)
 - 다운로드 권리만 인정
- 데이터기반행정법상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의한 데이터 관리 및 이용(2020. 12.10.시행)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신설
-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신설(2021. 10.21. 시행)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신설(2021. 12.9. 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2021. 9. 28. 정부안 국회 제출)

3.2 마이데이터 제도의 배경

○ 취지

-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자료 전송요구권'을 핵심 기반으로 파악함
-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음
- 경쟁법적으로 데이터 및 서비스 시장의 lock-in 효과의 감소를 일정 정도 기대
 - 데이터이동권이 시장실패의 보완 내지 경쟁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실증자료는 아직 없으나 통신시장에서 번호이동제도의 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예상
 - WP29 의견서는 데이터이동권이 서비스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나, GDPR 자체는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것이고 경쟁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
- 마이데이터사업자에 의한 데이터 집중, 동의범위를 넘는 데이터 이용 및 결합이 문제될 수 있음

3.3 분쟁조정 사례

-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의 제공신청과 관련하여 마이데이터적 접근방식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 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8.29. 선고 2018구합851판결)은 자동차 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보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자동차 등록원부의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음(국토부의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2등급 개인정보에 해당)
- 개인정보성이 강한 공공데이터의 경우 마이데이터적 접근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이 가능함

3.3 분쟁조정 사례

- 2017-007 자동차 등록번호별 차대번호(1~11자리) 및 최초등록일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 2018-014 자동차 등록번호별 자동차 정보(API)
 - 신청데이터: 차명, 차종종별명, 용도구분명, 최초등록일, 제작년월일, 색상, 취득가액, 주행거리, 제원관리번호, 기존 영업용여부, 부활등록여부, 양도연월일, 사용연료명, 배기량, 변속기, 승차정원, 모델연도 등 17개 항목
 - 신청 목적 : 중고차 정보서비스 제공
 - 조정결정

자동차등록번호 자체의 개인정보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 자동차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번호의 개방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를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결정
 - 피신청인인 국토교통부는 위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락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결

3.3 분쟁조정 사례

○ 2020-012 자동차 등록번호별 차대번호(17자리 전체)

- 신청데이터: 자동차등록번호별 차대번호(17자리 전체)
- 신청인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후 자동차등록번호를 송신하면 피신청인이 이에 대응하는 차대번호 17자리를 제공
- 신청목적: 맞춤형 자동차 정보서비스 제공
- 조정결정

-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피신청인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
 - 이용조건의 부과
 - 신청인은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신청인은 동의사실, 데이터 관리 및 이용현황을 피신청인측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신청인의 의무불이행시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고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
- 위와 같은 조정결정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성립

3.3 분쟁조정 사례

- 2020-020 열차 승차권 유효성 검증 데이터(코레일)
 - 신청데이터: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장증빙용으로 제출한 승차권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승차권 번호를 입력하면 코레일이 해당 승차권의 이용/반환 여부에 관한 정보를 API로 제공할 것을 신청
 - 쟁점: 신청데이터가 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에 해당 여부

3.3 분쟁조정 사례

- 조정결정

- 신청데이터가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 신청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신청목적을 고려하면 신청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움
 - 현재 공공기관이 출장비 부담수령여부 내부감사 등의 목적으로 신청 데이터를 공문으로 협조요청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문서로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함
- 신청인은 신청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이용하며, 이용조건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속기관, 담당업무 및 이용조건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데이터 제공 가능

- 조정성립

- 개별 정보주체(임직원)의 동의 의사를 얻도록 한 조정결정은 아니나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같이 개인정보성 데이터를 API로 제공하는 것에 특징이 있음

3.3 분쟁조정 사례

- 2021-001 소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데이터(축산물품질평가원)
 - 신청데이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목장관리앱 서비스를 위한, 농가별 소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 데이터
 - 쟁점: 이 사건 데이터가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상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정결정: 정보주체(축산농가)의 동의의사를 확인 후 신청 데이터를 제공

-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이동전화 본인인증 등 전자적 수단으로 확인
- 피신청인은 매일 갱신된 데이터를 제공
- 이용조건(신청인에 대한)
 - 신청인은 데이터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함
 - 수집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정보주체가 신청인의 서비스를 탈퇴하는 등 더 이상 신청인이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청인이 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를 제공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함

3.4 과제

○ 신청인의 데이터 오남용 방지

-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얻은 동의의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는 행위는 규범적,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 보안 및 인증의 문제

- API 전송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동의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에서 CI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이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



THANK YOU

공공데이터 주요 분쟁조정사례 및 이슈

-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및 타법령상 비밀/비공개 사유를 중심으로-

2021. 12. 1.

[2021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컨퍼런스]

숙명여대 법학부

문선영

공공데이터법

목 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3. 7. 30. 제정 / 같은 해 10. 13. 시행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예)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레저, 농림, 수산, 임업, 범죄, 특허, 과학, 연구, 학술, 논문, 문화정보 등 다양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의무

-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자체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 하여서는 안됨(법 제3조 제4항)**.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하여야** 함 (법 제17조 제1항).

타법과의 관계

-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법 제4조)**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비공개대상정보(제17조 제1항 단서)

-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 (제2호)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제3자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 비밀'에 한하지 않으며(대법원 2009두 19201, 대법원 2010두24647, 대법원 2007두1798), 법인의 내부관리 정보, 자산이나 회계관련정보,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공공데이터법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 해당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본 조항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여부는 법인 등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됨.
-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①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 유출 방지를 통해 영업의 자유를 보호할 이익과 ②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③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판단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이 때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 12303 판결).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 동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더라도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됨.
- 즉,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사유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에 해당되는 정보인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법인 등은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호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함. 따라서 행정예규 등은 불포함.

예)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데이터 주요 분쟁조정 사례

영업상 비밀 · 타법상 비공개사유 관련 분쟁조정 사례

공매도 잔고 데이터(금융감독원)

군매점 판매 상품 데이터(국방부)

노동조합현황 데이터(고용노동부)

전문예술법인 · 단체 데이터(예술경영지원센터)

01

공매도 잔고 데이터(금융감독원, 2018-009)

분쟁조정사례1

공매도 잔고 데이터

【사건 개요】

- 신청인은 공매도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 및 기업에 더 쉽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공매도 잔고 데이터(종목명, 종목번호, 기준일, 참가자별 공매도 잔고수량 등. 단, 참가자 인적사항은 제외)**의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됨.
- 제공거부 사유 : 매도자의 투자전략이 노출되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신청데이터의 보유·관리 현황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동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공매도자의 순보유 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음
 - * 해당증권에 관한 사항, 매도자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국적,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 투자등록번호 등 연락처
 - 공매도 잔고를 다량 보유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80조의3제1항). 매도자가 제출한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에서 한국거래소로 자동전송되고, 한국거래소가 이를 가공하여 공매도 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함**
- ** 종목별/업종별 공매도 잔고 현황,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현황,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50종목 등을 엑셀파일로 게시하고 있으나 한국거래소는 저작권을 근거로 영리적 이용을 금하고 있음

분쟁조정사례1

공매도 잔고 데이터 (2018-009)

【쟁 점】

- 신청데이터가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데이터가 해당 규정(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공시범위를 넘어서는지?(자본시장법 제180조의3제2항, 금융투자업규정의 순보유잔고 공시에 관한 규정 동 고시 제6-31조의2)
 - 해당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 신청데이터 제공시 기존 공시데이터와 결합하여 매도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

분쟁조정사례1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순보유잔고의 보고

법 제180조의2 - 차입공매도자에 대하여 해당증권에 관한 매수, 그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비율(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만분의 1 이상, 령 208조의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

순보유잔고의 공시

법 제180조의3-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공시 의무

분쟁조정사례1

[관련 규정]

※ 금융투자업 규정 제6-31조의2 (순보유잔고의 공시)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후문생략)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 고시에는 순보유잔고 공시의무 최초 발생일만 규정되어 있고, 잔고수량이나 비율이 빠져 있음.
 - 피신청인은 공시의무자의 투자전략 노출 등의 우려로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등의 정보는 감독목적으로 공시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
 - 법상 일정기준 충족시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의 공시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로 그 범위를 축소는 것이 타당한가?

분쟁조정사례1

[관련 이슈 검토]

-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제도가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악용되거나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순보유잔고 보고의 무와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즉,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의하면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해당 데이터 제공 시 특정매도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이 사건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분쟁조정사례1

공매도 잔고 데이터 (2018-009)

【조정결과】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되 다만, 「자본시장과 투자금융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른 공시범위인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그 외의 데이터는 제공에 필요한 소요기간에 대한 내부검토를 통해 제공시기를 정하도록 함.

피신청인은 특정 투자자의 거래정보 노출, 시장참가자들에 혼란 야기,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인한 감독 검사 업무 수행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불성립 종결.

02

군매점 판매 상품 데이터(국방부, 2017-004)

분쟁조정사례2

군매점 판매 상품 데이터

【사건 개요】

○ 신청데이터 : PX(군 매점) 상품 관련 자료*

*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시중판매금액 대비 할인율, 판매수량 및 매출(전체/부대/지역별), 납품배송단위/보충요청 시 배송기간, 상품 판매결제유형(ex. 카드, 현금, 전자화폐 등)

○ 신청목적 : 국군 장병의 가족 및 지인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편지, 사진, PX 상품교환권을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앱서비스 제공

○ 제공거부(신청반려) 사유 : 신청데이터는 상품 납품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에 해당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군 매점 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상품명, 납품업체,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기존업체의 계약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매실적정보(판매수량 및 매출),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납품정보(시중가격, 납품가격, 할인율) 등을 수집·관리하고 있음

※ 신청데이터 중에서 상품명, 판매가격, 상품규격(용량), 납품업체 정보는 국군 복지포털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음

* 일반인 회원 가입도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누구나 가입 후 열람할 수 있음

분쟁조정사례2

군매점 판매 상품 데이터

【쟁점】

○ 국방부 군매점에서 군인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데이터는 군 매점 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로서, 이중 "상품명, 판매가격, 상품규격(용량), 납품업체명" 정보는 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로서 PX 이용자에게 이미 노출되어 있으며 국군복지포털 등을 통해 군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는 영업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거나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데이터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할인율, 판매수량, 매출액 정보"는 국군복지단 내부에서 관련 직원 외에 접근을 제한하는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이를 공개하게 되면 해당 납품업체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수익이나 매출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해당업체의 경영이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됨.

분쟁조정사례2

군매점 판매 상품 데이터

【조정결과】

○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고,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락거부하여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됨

03

노동조합현황 데이터 (고용노동부, 2018-008)

분쟁조정사례3

노동조합현황 데이터

【사건 개요】

○ 신청데이터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데이터*

* 기업명/사업장명/노동조합명/조합원 수(남성/여성/전체)/전체 근로자 수/사무소 소재지/설립일/데이터 기준일자

○ 신청목적 : ISO 26000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성 분석에 활용

○ 제공거부(신청반려) 사유 : 노동조합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고용노동부는 매년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현황에 대한 노동단체카드를 수합하여「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통계를 산출하고(통계법 제18조 승인통계) 매년 하반기 통계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지역별 노동조합명부를 작성하여『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이라는 발간물을 매년 제작하고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있음

*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에 실물 책자로 배부하며, 외부에는 제공하지 않음

- 노동조합명부에는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년월, 전화번호, 조합원수(전체/여성), 상급단체 등 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신청데이터 중 기업명, 전체근로자수, 데이터기준일자는 별도로 관리되어 있지 않음

분쟁조정사례3

노동조합현황 데이터

【쟁점】

○ 신청데이터 중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연월, 전화번호, 조합원 수(전체/여성), 상급단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i) 아직 우리사회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사용자가 많아 노동조합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용자측으로부터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ii) '11.7.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어 노노갈등이 있을 경우 조합원 수, 설립일, 상급단체 등은 민감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iii) 대다수 노동조합은 자신의 존재 또는 정보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부적절함을 주장

○ 신청데이터가 통계법상 통계자료로서 공공데이터 제공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 공공기관의 업무상 취득하여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통계자료로도 이용될 경우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공데이터 제공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분쟁조정사례3

[관련 규정] -통계법 제31조

- 통계법은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라는 개념을 두고, 통계자료의 제공절차 및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통계법 제31조)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함(제3조제4호)

**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함(제3조제7호)

-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31조제1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 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제31조제2항)

-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함

* i)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ii)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상호·업종·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제31조제2항 각호)

분쟁조정사례3

[관련 규정] -통계법 제31조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분쟁조정사례3

관련 이슈 검토

- 노동조합 데이터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정보가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비밀성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이미 불특정 다수나 일반인을 상대로 공개된 사실이 있다면, 달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는 한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는 해당되지 않음
 - 위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장기간 게시되어 왔음에도 고용노동부에 제기된 민원이 없었고, 이미 많은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데이터 개방사이트(local.go.kr)"를 통해 노동조합의 데이터(조합명, 주소, 인허가일자, 폐업일자, 소속단체명, 조합원 수 등)를 개방하고 있다는 점("18.7.2기준 9,957개소, 해산된 노동조합 포함) 등을 고려할 때,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본 사안과 달리 공개되지 않는 노동조합관련 데이터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법인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제공여부는 해당 법인등에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최종결정되어야 함.

분쟁조정사례3

관련 이슈 검토

○ 공공기관의 업무상 취득하여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통계자료로도 이용될 경우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공데이터 제공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 통계법에 따라 작성된 통계는 국가는 물론 민간에서 각종 의사결정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되는 공공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널리 보급·이용되어야 하고, 통계작성이나 통계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법인등의 비밀이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
- 이에 따라 통계법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동법 제31조 제2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동법 제33조는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고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분쟁조정사례3

관련 이슈 검토

○ 공공기관의 업무상 취득하여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통계자료로도 이용될 경우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공데이터 제공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 본 사안에서 제공신청된 노동조합현황데이터는 이미 공공기관의 업무상 취득하여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로서 **통계법상 행정자료(동법 제3조 제7호)에 해당하고 이를 통계자료로도 이용한 경우**인데, 통계법에 따르면, 어느 경우이든 해당자료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 등의 정보가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석됨(동법 제2, 24, 31, 33조 등 참조)

-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미 공개된 바 있는 노동조합 현황데이터는 이를 통계법상 통계자료로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법인 등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제공될 경우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됨

분쟁조정사례3

노동조합현황 데이터

【조정결과】

○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의 소명 없이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됨

*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연월, 전화번호, 조합원수(전체/여성), 상급단체 등 6개 항목

분쟁조정사례3

관련 이슈 검토

○ 통계법과 공공데이터법의 정합성 문제

- 통계법은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기만 하면 통계법상의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공공데이터법은 법인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의 예외가 되는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범위가 통계법상 보호되는 법인등의 비밀보다 협소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미 공공기관의 업무상 취득하여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로서 통계법상 행정자료(동법 제3조 제7호)에 해당하고 이를 통계자료로도 이용한 경우를 모두 통계법에 따라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

04

전문예술법인 · 단체 데이터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012)

분쟁조정사례4

전문예술법인·단체 데이터

【사건 개요】

○ 신청데이터 :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데이터*

*지정형태, 설립연도, 법적형태, 활동유형, 인력현황, 재정현황, 회원현황, 활동 실적

○ 신청목적 : 학술연구

○ 제공거부(신청반려) 사유 : 신청데이터는 통계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단체의 경영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피신청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설문 조사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홈페이지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본정보를 게시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를 발간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분쟁조정사례4

전문예술법인 · 단체 데이터

【쟁점】

- 신청데이터에 단체의 경영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 데이터가 통계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서 단체의 경영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통계법 제33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공거부 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공공 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사례4

관련 이슈 검토

- 통계법상 법인등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한 데이터로서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데이터법 제4조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고 이의 제공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공공데이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통계법상 비밀보호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은 통계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보급, 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른 것이며(통계법 제2조),
 -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시 이용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없는 경우에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31조).

분쟁조정사례4

관련 이슈 검토

-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고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3조).
- 통계법상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이고(동법 제3조 제3호),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을 말하므로(동법 제3조 제4호), **통계자료에 해당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통계법이 특별규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됨.
- 그러나 동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법인등의 비밀은 공공데이터법상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는 달리 별도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법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분쟁조정사례4

관련 이슈 검토

- 그러므로, 통계법상 통계자료의 제공에 의해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계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널리 보급, 이용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고,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분쟁조정사례4

관련 이슈 검토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비식별, 범주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통계법상 법인등의 비밀이나 정보공개법상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더욱이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고, 통계자료의 제공시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법 제31, 33조 등 참조) 개인이나 법인 등의 비밀 보호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다만 비식별, 범주화를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고 이를 통해 해당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게 된다면, 해당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보호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분쟁조정사례4

관련 이슈 검토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비식별, 범주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의 비식별, 범주화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제공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영업비밀의 내용자체가 비밀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공개로 인해 경쟁법인이나 일반인 등이 이를 습득하여 활용하게 된 결과 해당 법인등의 영업이나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예를 들어 비식별화 등을 통해 해당정보의 보유주체를 알아 볼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 비밀의 내용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된다면 영업비밀 자체에 대한 침해가 성립될 우려가 있음.
 - 이 사건 데이터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정보(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와 유사한 것으로서,
 -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되고 그 과정에서 알려진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1)전문예술법인.단체의 명칭을 비식별화하고 2)설립 연도 및 소재지 등을 범주화하였으며 3)일부 단체 및 세부활동 실적은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이 확보되도록 조정결정함.

분쟁조정사례4

전문예술법인·단체 데이터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조정결정하여 조정이 성립됨.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명칭을 비식별화하며, 그 중 법적형태가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설립연도를 10년 단위로 범주화하며, 분류는 최초~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2010년~2019년으로 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활동실적 중 세부실적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관련 주요 분쟁조정 사례

with 공공데이터와 공공저작물의 관계 등 제3자 권리 관련 이슈

2021. 12. 01.

법무법인 이안 양영화 변호사

yhyanglaw@gmail.com, 02-6477-5000

목 차

1. 조정사례1 –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한국감정원, 2019)
2. 조정사례2 –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3. 조정사례3 –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중단(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4. 조정사례4 – 문화유물 3D데이터(국립춘천박물관, 2018)

조정사례1.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한국감정원, 2019)

사건 개요

- 신청 데이터 : 전국 아파트 평수별, 타입별 평면도 데이터 및 목록(디자인 업체가 보유한 아파트 평면도에 색채, 무늬 등을 부가하여 가공한 전자파일의 집합물)
- 신청 목적 : 부동산 정보서비스 제공
- 신청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한국감정원은 2009년 외부 디자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신청 데이터를 제작하였고, 이 데이터에 대한 이용 권리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테크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제공거부 사유 : 외부 디자인업체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개 시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저해 우려

조정사례1.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한국감정원, 2019)

쟁점1.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 권리 포함 여부

✓ 신청 데이터의 저작물 해당 여부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 A사가,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제작자(B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B사가 제작한 아파트 백과 책자 내용을 복제하여 A사의 회사명을 기재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B사가 A사측을 고소한 사안

- 아파트의 평면도나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B사의 평면도 및 배치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 선고

조정사례1.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한국감정원, 2019)

쟁점1.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 포함 여부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 A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B사에 제공하고 B사가 주택 신축한 후, B사가 A의 동의 없이 A가 제공한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C건축사와 주택 신축하자, A가 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
 - A의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A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A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B,C의 설계도서는 A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B,C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함
- 신청 데이터의 양이 많고, 동종의 작품이라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저작물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2008도29 판결에서 아파트 평면도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더라도 신청 데이터에는 위 판례와 다른 특성을 가진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디자인 업체가 아파트 평면도에 색채나 무늬 등을 추가하였으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움

조정사례1.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한국감정원, 2019)

쟁점1.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 권리 포함 여부

✓ 신청 데이터의 콘텐츠산업진흥법 상 보호대상인 콘텐츠 해당 여부

- 제37조(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 데이터의 경우,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았고 5년이 경과했으므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보호대상이 아님

✓ 신청 데이터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여부

-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는 '제3자의 권리'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3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는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 도 '제3자 권리' 에 포함됨
- 신청데이터의 양이 상당하고, 외부 디자인업체가 데이터 구축을 위해 색채나 무늬 등을 부가하는 작업을 하는 등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신청인이 부동산 제공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카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조정사례1.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한국감정원, 2019)

쟁점2. 공공기관이 라이선스만 보유하는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
- 신청데이터는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업체가 제작한 것이므로 “생성”에 해당하지 않음
- “취득”이란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이 다른 주체로부터 이용권한(라이선스)만 부여받아 이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조정사례1.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한국감정원, 2019)

조정 결정

- ✓ 신청데이터의 성질상 공개시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피신청인이 신청데이터를 비공개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님
- ✓ 그러나, 신청데이터에 제3자의 저작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이 이용권한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정사례2.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사건 개요

- ✓ 신청데이터 : 발간물 PDF 파일
- ✓ 신청 목적 : 전자책 제작 및 출판
-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이 사건 데이터는 대학교 연구진이 작성했고 용역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음. 이 사건 데이터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해당 웹페이지에 '무단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함'의 취지가 표시됨
- ✓ 제공거부 사유
 - 피신청인은 내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제3자와 유상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얻은 수익을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창작의욕을 고취해 왔으므로, 직원들의 기대권이 침해되며, 그간 피신청인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해온 제3자와 형평성 문제 및 제3자의 이익제기 가능성 있음(이 사건 데이터에 대해서는 출판권이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음)
 - 저작인격권은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데이터가 제공될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침해 우려 있음

조정사례2.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쟁점1.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저작권을 이유로 제공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 등의 표시만 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공공기관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외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그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인 이용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오로지 저작자에게만 인정되고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임. 공공데이터는 통상 이미 공표된 것이므로 공표권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성명표시권은 발간물에 대부분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추후 저작자가 성명표시에 대해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되며, 동일성유지권은 이용자가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고 변형이나 누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침해 소지가 없음 10

조정사례2.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쟁점1.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저작권을 이유로 제공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출판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 경우로서 그 출판권자, 배타적발행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 출판권, 배타적발행권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고 신청인에게 신청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함
- ✓ 피신청인 내부 규칙이나 내부 기준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해 내부 직원에게 보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내부 직원이 보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기대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제3자란 해당 공공기관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데, 위 사정은 공공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이므로,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정사례2.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쟁점1.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저작권을 이유로 제공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저작권법의 규정이 공공데이터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공공데이터법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규정 가운데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가 문제됨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함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대한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며,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제공 의무와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즉 공공데이터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는 규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조정사례2.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쟁점2.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출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법 규정 중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공공기관의 발간물이라는 것만으로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출판하는 것을 제한할 법률적 근거는 없음
- ✓ 다만, 공공기관이 발간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PDF로 제공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데이터를 그대로 서적 형태로 발간하여 판매할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한 사실을 모르고 구입할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서적에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조정사례2.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조정 결정

-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1) 신청인은 현재 데이터에 표시된 저자 및 기여자의 성명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자가 성명표시와 관련된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신청인의 출판물(인쇄, 전자책)에 반영하여야 함
- 2)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의 동일성을 훼손해서는 안 됨
- 3)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피신청인 홈페이지(URL 포함)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표시는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함. 또한 인터넷 판매의 경우 출판물 뿐 아니라 판매 웹페이지에도 이러한 취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함

조정사례2.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의 관계

✓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의 중첩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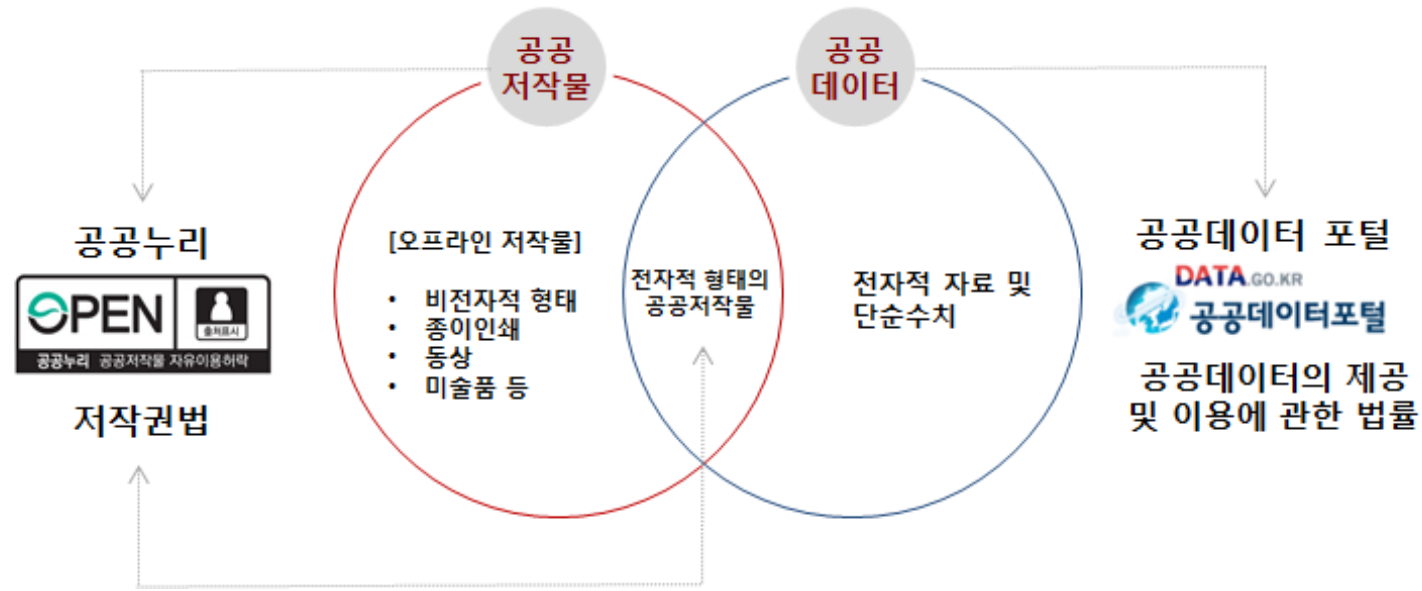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조정사례2.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 공공데이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공공저작물 중 광(光) 또는 전자적 형태의 저작물은 공공데이터에도 해당함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요령, 2014. 6., 10면>

조정사례2.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 ✓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법의 충돌 소지
 - 공공데이터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스스로 생성 및 취득한 공공데이터인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
 - 공공데이터법은 2013. 7. 30. 제정되어 2013. 10. 31. 시행되었고, 저작권법 24조의2는 2013. 12. 30. 개정, 2014. 7. 1. 시행되는 개정법에 신설된 조항임
 - 저작권법 24조의2 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대상에 해당할 뿐임
→ 저작권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 보유 및 행사가 가능함

조정사례2.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 저작권법 제24조2 제2항이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저작물과 같이 자유이용대상(저작권 재산권 제한사유)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용활성화 시책,수립 대상으로만 규정한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중 일부는 유상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성격도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자유이용 대상으로 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인데, 공공데이터법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취지와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 저작권법에는 공공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공공누리 2유형과 4유형은 상업적 이용 금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4항과 충돌됨

조정사례3.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중단(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사건 개요

- ✓ 신청 데이터 : 발간물 4건
- ✓ 신청 목적 : 출판 및 판매
- ✓ 신청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신청 데이터 4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무단 전재 금지 및 인용시 출처표시' 를 명시하고 있음
- ✓ 제공중단 사유 : 신청인은 2018년경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받아 출판해 왔는데, 2019년경 피신청인이 아래의 이유로 출판행위 중단을 요구함
 - 피신청인 내부규정에 의하면 피신청인 보유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 체결이 필요한데 2018년경 담당자가 이를 모르고 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데이터를 제공했으므로 제공 결정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함
 - 이 사건 데이터 중 3개는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1개는 피신청인과 제3자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단독으로 이용허락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됨

조정사례3.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중단(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쟁점1. 저작물에 대한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의 의미 및 공공데이터제공 처분의 취소(또는 철회) 가부

✓ 저작물에 대한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의 의미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해당 데이터가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의 이용허락의 성격도 가짐
-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때에는 비영리 목적의 이용으로 한정하는 취지를 표시하였으나,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의 기초가 된 신청인의 제공신청서 상으로는 그 활용목적이 '출판 및 전자책 제작'으로 되어 있었음. 따라서 홈페이지의 표시 여하와 관계없이 공공데이터 제공결정에 제공신청서 상의 활용목적에 따른 데이터 이용을 허락하는 취지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정사례3.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중단(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쟁점1. 저작물에 대한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의 의미 및 공공데이터제공 처분의 취소(또는 철회) 가부

✓ 공공데이터제공 처분의 취소(또는 철회) 가부

- 피신청인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응하여 제공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공데이터법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해당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이 사건 데이터 중 1개는 피신청인과 제3자의 공동저작물이며,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할 때 피신청인과 제3자의 합의에 의해 행사(이용허락)해야 함. 위 1개 데이터에 대한 제공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음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음

조정사례3.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중단(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쟁점1. 저작물에 대한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의 의미 및 공공데이터제공 처분의 취소(또는 철회) 가부

-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누234 판결
착오에 의한 처분이었다 할지라도 착오자체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특히 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 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음

조정사례3.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중단(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쟁점1. 저작물에 대한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의 의미 및 공공데이터제공 처분의 취소(또는 철회) 가부

✓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중단사유 해당여부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이 사건의 경우,
 - 발간물 4건 중 1건은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28조 제1항 제2호 사유에 해당하여 제공중단사유에 해당
 - 피신청인은 저작물인 신청데이터에 대해 별도 유상계약 체결시 내부직원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내부직원의 기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내부분문에 불과할 뿐 제공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정사례3.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중단(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쟁점2. 공공기관 직원 실수로 데이터가 제공된 후 제3자 권리 포함 등을 이유로 제공중단시, 공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여부

- ✓ 제36조(면책)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 ✓ 이 규정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 판례 이론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의 직원이 과실로 잘못 제공하였다가 중단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 공공기관 또는 해당 직원의 손해배상 의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정사례3.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중단(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조정 결정

- ✓ 신청 데이터 중 A건의 경우, 공공데이터제공중단 대상이며, 나머지 3건(B,C,D)은 공공데이터중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 신청인이 B,C,D건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의 출처 표시와 함께 피신청인의 홈페이지(URL포함)에서 해당 데이터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무료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조정사례4. 문화유물 3D데이터(국립춘천박물관, 2018)

신청 개요

- ✓ 신청 데이터 : 석가여래좌상 2점, 약사여래좌상(보물 제1872호) 1점에 대한 3D 스캔 데이터
- ✓ 신청 목적 : 실감형 전시 서비스 제공
- ✓ 신청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신청데이터는 문화유물에 대한 3D데이터로 해당 유물의 제작기법 및 조성 배경을 연구한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성됨. 국립박물관인 피신청인은 소장하는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할 때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에 따름
- ✓ 제공거부 사유 : 신청 데이터는 준비 중인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 이므로 해당 보고서 발간 전에는 제공 불가

조정사례4. 문화유물 3D데이터(국립춘천박물관, 2018)

쟁점1. 공공기관이 신청 데이터를 포함한 보고서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이라는 사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있음(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 이 사건 데이터는 유물을 있는 그대로 스캔한 3D데이터이므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음
- ✓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신청인에게만 특별히 권리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는 등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므로(제21조, 제27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불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외에 달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정사례4. 문화유물 3D데이터(국립춘천박물관, 2018)

쟁점2.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속하는 경우에도 기관 내부에 제공을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공공데이터법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은 '법률'이어야 하며, 해당 법률의 내용이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함

→ 기관 내부 규정은 법률이 아니므로 공공데이터법에 우선하여 해당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내부 규정의 상위법인 법률에 공공데이터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함

조정사례4. 문화유물 3D데이터(국립춘천박물관, 2018)

쟁점2.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속하는 경우에도 기관 내부에 제공을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의 경우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령이므로 위 복제 규칙은 공공데이터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
- 위 복제 규칙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설치,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내외 박물관자료를 보존,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박물관자료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법 제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이미 생성 또는 취득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일 뿐 신청인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도 공공데이터법 제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조정사례4. 문화유물 3D데이터(국립춘천박물관, 2018)

쟁점3. 3D스캔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포함여부 판단방법

- ✓ 3D스캔 데이터의 '대상'이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에 해당하는지와 대상을 '3D스캔하는 과정'에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 등이 부가되어 제3자의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각각 검토하여야 함
 - 이 사건 데이터의 대상은 유물인데 유물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
 - ▶ 관련 조정 사례 : 대통령기록관의 해외 국민 선물 3D 데이터 (국가기록원, 2017)
신청인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해외 국민들로부터 받은 선물의 3D 데이터를 신청했으나, 선물들은 공예품, 조각 등 미술저작물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스캔한 3D데이터는 미술저작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으므로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사전조정함
 - 유물을 3D스캔하는 것은,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고 새로운 창작성 등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며 비교적 기계적이고 정해진 방법으로 하는 것이므로 창작성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으며, 설령 창작성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그 권리를 모두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조정사례4. 문화유물 3D데이터(국립춘천박물관, 2018)

조정 결정

-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함
- ✓ 제공되는 데이터는 3차원 입체정보 및 색상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ICF 파일 등), 데이터의 용량은 약 50메가바이트*로 함
 - ※ 피신청인은 조정부 회의에서 문화재 스캔데이터의 특성상 고용량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위품·복제품 유통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를 요청하였고, 이를 신청인이 양해하였다는 점을 고려함
-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 데이터 제공기관 등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데이터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저작권법 제37조의2 참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이안 양영화 변호사

공공데이터 제공방법의 기술적 이슈


2021. 12. 0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종열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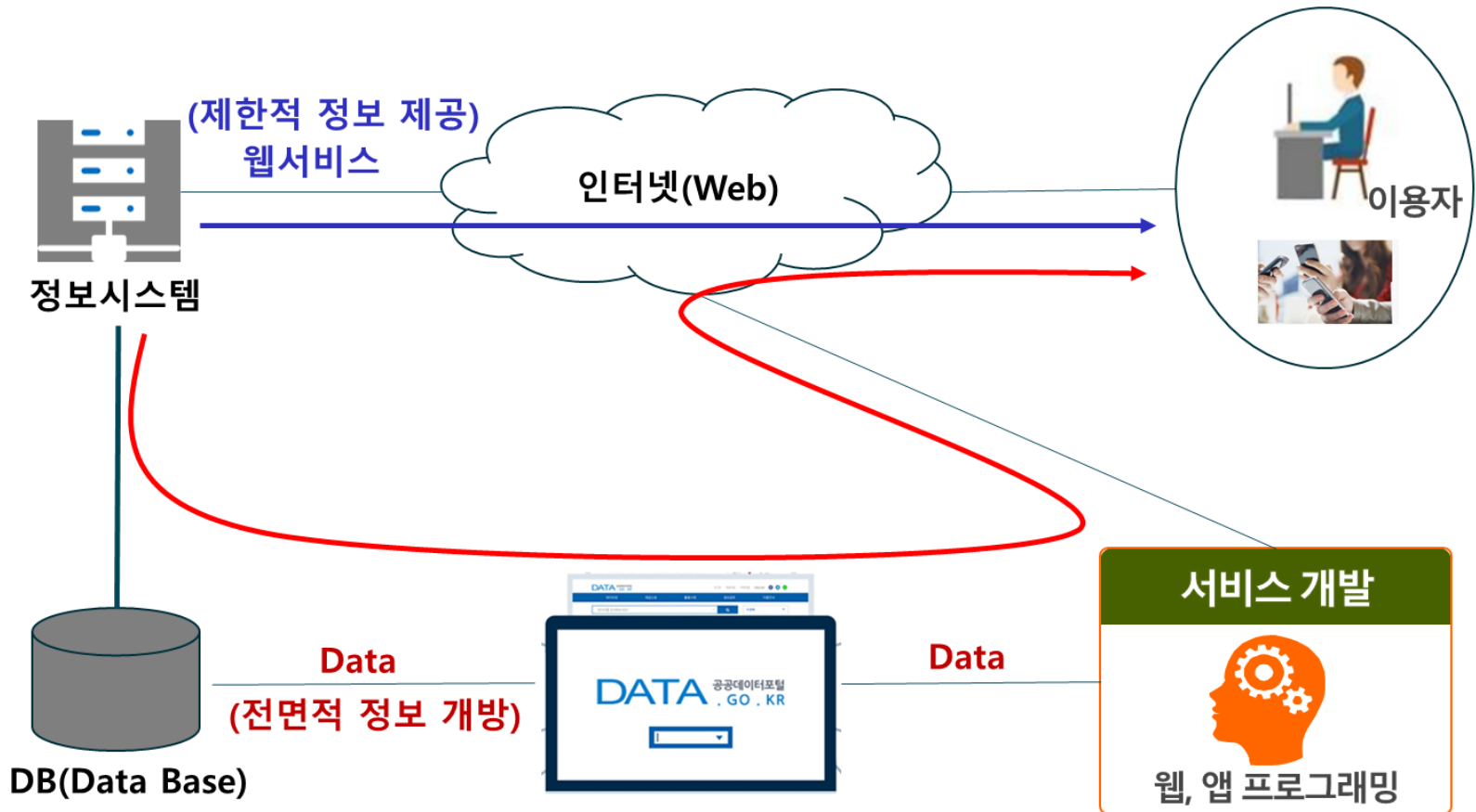


CONTENTS

- ✓ 공공데이터 개요 및 관리체계
 - ✓ 공공데이터 분쟁 사례로 본 기술적 이슈
 - ✓ 공공데이터 제공방식
- 

공공데이터 개요 및 관리체계

정보서비스 제공과 데이터 제공



단순히 공공 홈페이지, 포털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서...

☞ 데이터 제공으로 다양한 민간의 앱/웹 서비스 개발 등 비즈니스 기회 제공

Open Data Charter

● G8 정상 오픈데이터 헌장 발표('13.7.)

〈 5대 기본원칙 〉



1. Open Data by Default

정당한 이유있는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공개를 원칙

2. Quality and Quantity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 및 양적으로 확대

3. Useable by All

다수 이용자를 위한 포괄적으로 데이터 개방

4. Releasing Data for Improved Governance

국가간 공유 및 데이터 수집, 표준화, 개방절차 등 공개

5. Releasing Data for Innovation

상업적/비상업적 활용과 Machine-readable 포맷으로 제공

● OGP 정상회의 오픈데이터 헌장 발표('15.10.)

〈 6대 기본원칙 〉

1. Open by Default

원칙적 개방, 비개방사유 명시, 개방문화, 익명화 등

2. Timely and Comprehensive

Raw Data, 적시성, 고품질 데이터, 이용자 피드백, 개방절차 등

3. Accessible and Usable

통합포털, 오픈포맷, 기계판독가능, 표준화, 다양한 이용자 접근

4. Comparable and Interoperable

메타데이터 제공, 충분한 설명정보, 국내외 표준 매핑

5. For Improved Governance and Citizen Eng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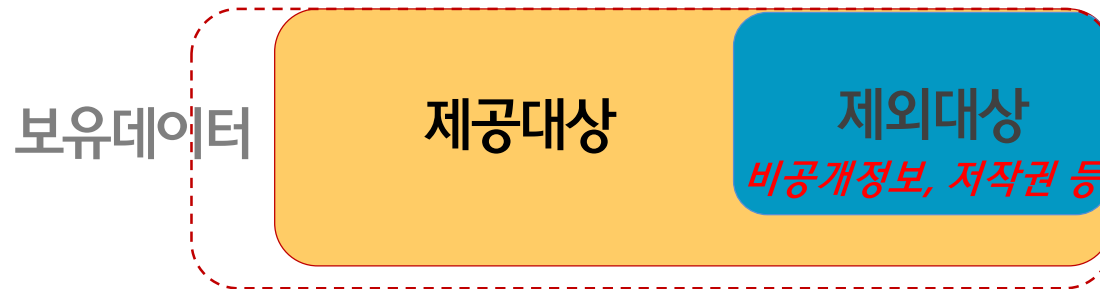
오픈데이터 정책, 정부 투명성, 시민참여협력, 증거기반정책 활용

6. For Inclusive Development and Innovation

민간데이터 개방, 정부민간 파트너십, 연구교육지원, 국가간공유

공공데이터 개념 및 제공방법

- 공공데이터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자화된** 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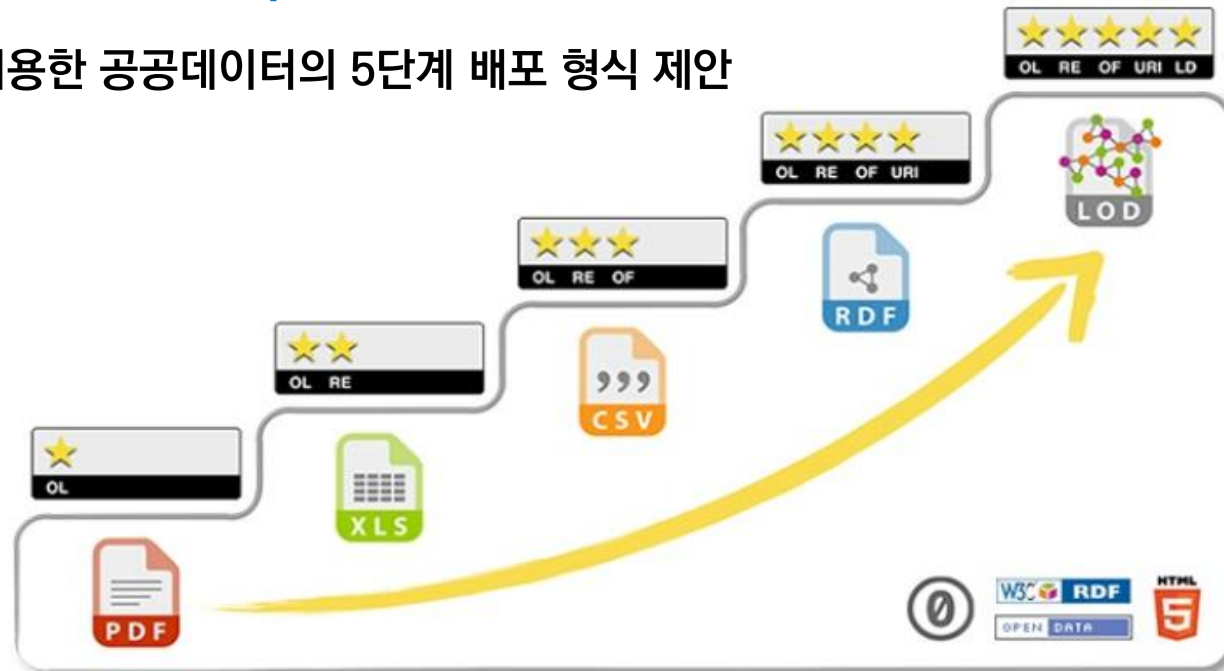
- ✓ 이용자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정보기술 활용 및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 (machine-readable):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

기계판독 가능 형태의 데이터 포맷

● 5 Star Open Data (by Tim Berners-Lee)

- 별점을 이용한 공공데이터의 5단계 배포 형식 제안



단계	내용
★	데이터를 웹 상에 오픈 라이선스 로 (포맷에 상관없이) 공개
★★	구조화된 데이터 로 제공(예, 표를 스캔한 이미지 대신 엑셀)
★★★	비독점적 오픈 포맷 으로도 제공(예, 엑셀은 물론 CSV)
★★★★	사람들이 가리킬 수 있도록 개체를 나타내기 위해 URI 를 사용
★★★★★	데이터의 문맥과 배경 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데이터와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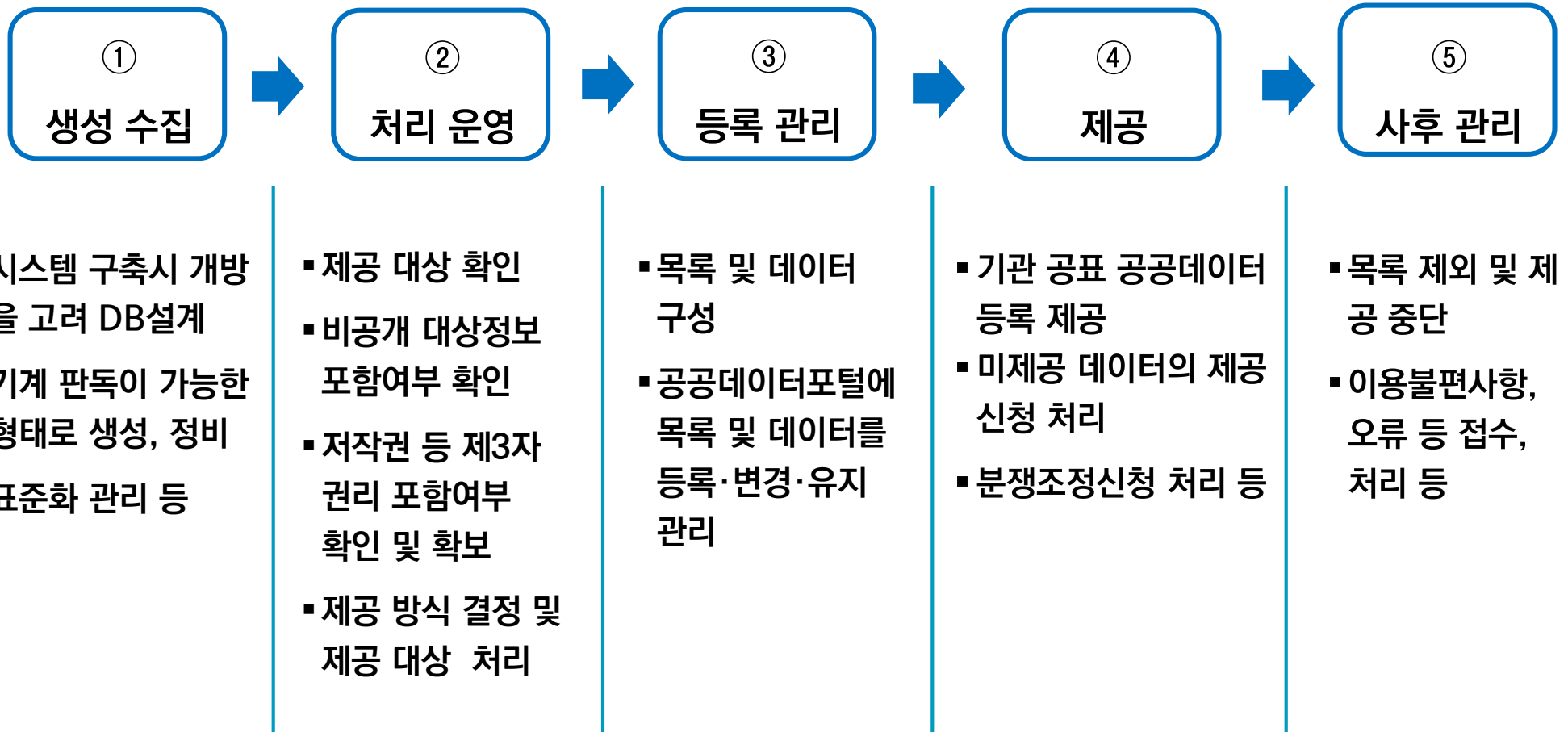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오픈 포맷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서 Machine Readable 기반의 오픈포맷 정의
 -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 오픈 라이선스, 비독점적 파일 포맷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미충족포맷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불가)	최소충족포맷	오픈포맷*		
특징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을 수만 있는 데이터로 자유로운 수정, 변환 불가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 가능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비독점적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 가능	URI** 기반으로 데이터 속성특성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	웹상의 다른 데이터와 연결, 공유 가능
예시	PDF	HWP, XLS	CSV, JSON, XML	RDF	LOD***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절차

●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



공공데이터 생성 수집

● 표준 기반 데이터 생성, 수집 체계 구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표준 수립 및 공통표준용어, 제공표준 적용, 메타데이터의 등록 관리 등 수행

● 공공데이터의 보편적 이용을 위한 DB 설계 및 구축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고도화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생성·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가 포함(개인정보, 저작권 등)된 경우, 반드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운영
 - * DB로 구축하는 경우, 제공대상 정보를 별도 테이블로 구성

●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생성, 정비

- 파일데이터는 CSV, JSON, XML 등 오픈포맷으로 수집·관리하고,
- 갱신이 빈번한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DB 구축, 데이터 제공환경 등 관리기반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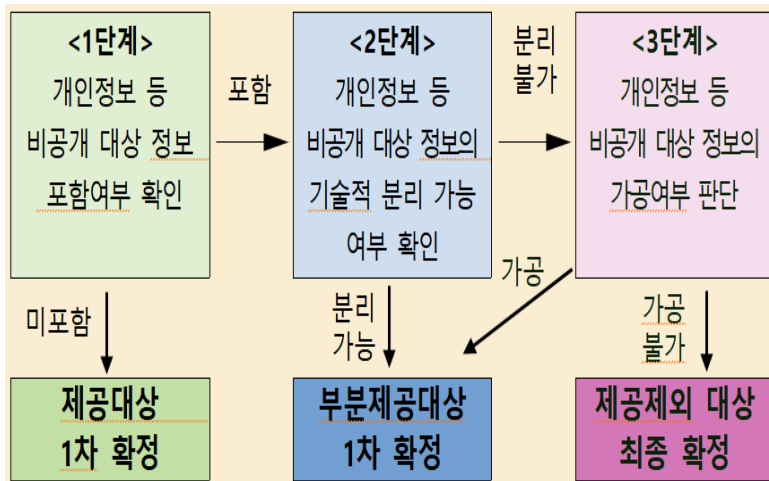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처리·운영

● 공공데이터 및 제공대상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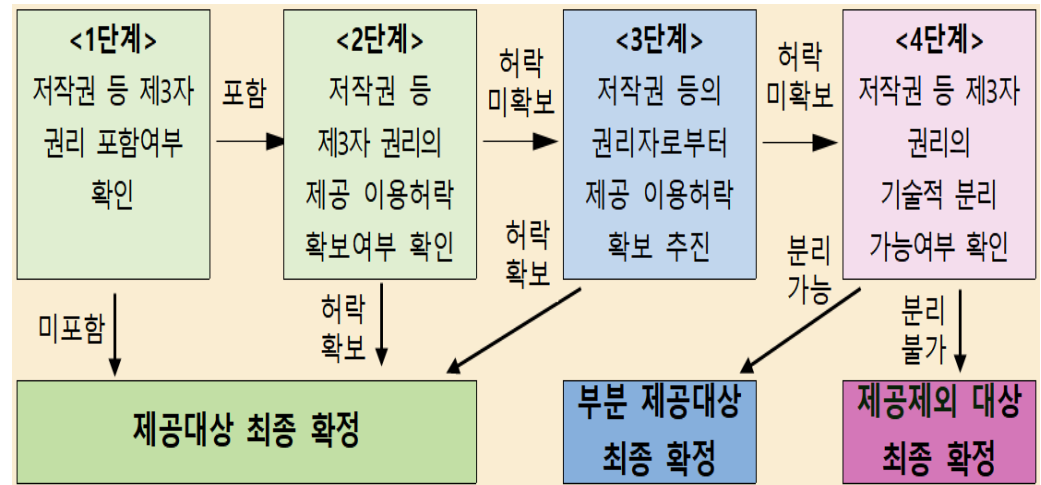
- 공공데이터법 및 정보공개법에 의한 제공 대상 여부 확인
-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모든 공공데이터가 검토 대상

● 비개방 대상정보(개인정보, 저작권 등)의 포함여부 확인

[비공개 대상정보 확인절차]



[제3자 권리 확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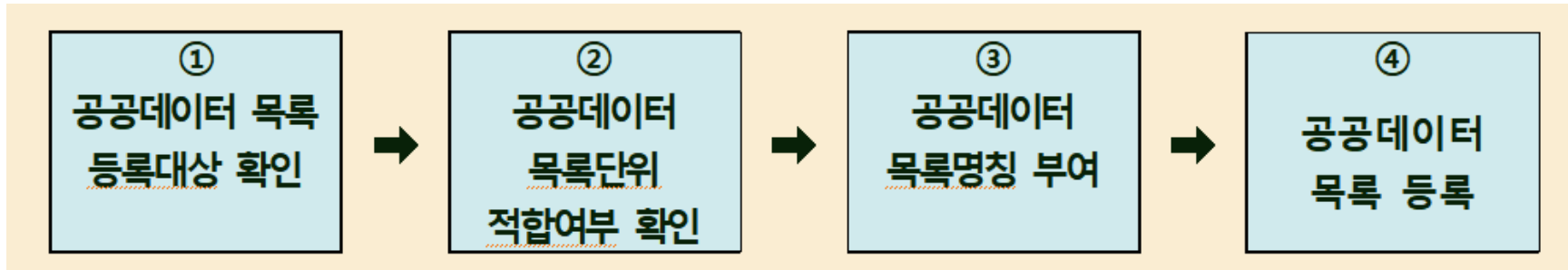
개인정보 및 비식별 처리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

처리기법	예시	세부기술
가명처리 (Pseudonym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임걱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휴리스틱 가명화 ② 암호화 ③ 교환 방법
총계처리 (Aggreg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걱정 180cm, 홍길동 170cm, 이콩쥐 160cm, 김팔쥐 150cm → 물리학과 학생 키 합 : 660cm, 평균키 165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총계처리 ⑤ 부분총계 ⑥ 라운딩 ⑦ 재배열
데이터 삭제 (Data Re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 → 90년대 생, 남자 • 개인과 관련된 날짜정보(합격일 등)는 연단위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식별자 삭제 ⑨ 식별자 부분삭제 ⑩ 레코드 삭제 ⑪ 식별요소 전부삭제
데이터 범주화 (Data Suppr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길동, 35세 → 홍씨, 30~4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⑫ 감추기 ⑬ 랜덤 라운딩 ⑭ 범위 방법 ⑮ 제어 라운딩
데이터 마스킹 (Data Mas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홍○○, 35세, 서울 거주, ○○대학 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⑯ 임의 잡음 추가 ⑰ 공백과 대체

공공데이터 등록·관리

● 제공대상 목록 구성



●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 데이터 특성 관리형태에 따라 파일(오픈포맷) 및 Open API 방식으로 등록
- 저작물 포함 데이터는 반드시 공공누리 적용

www.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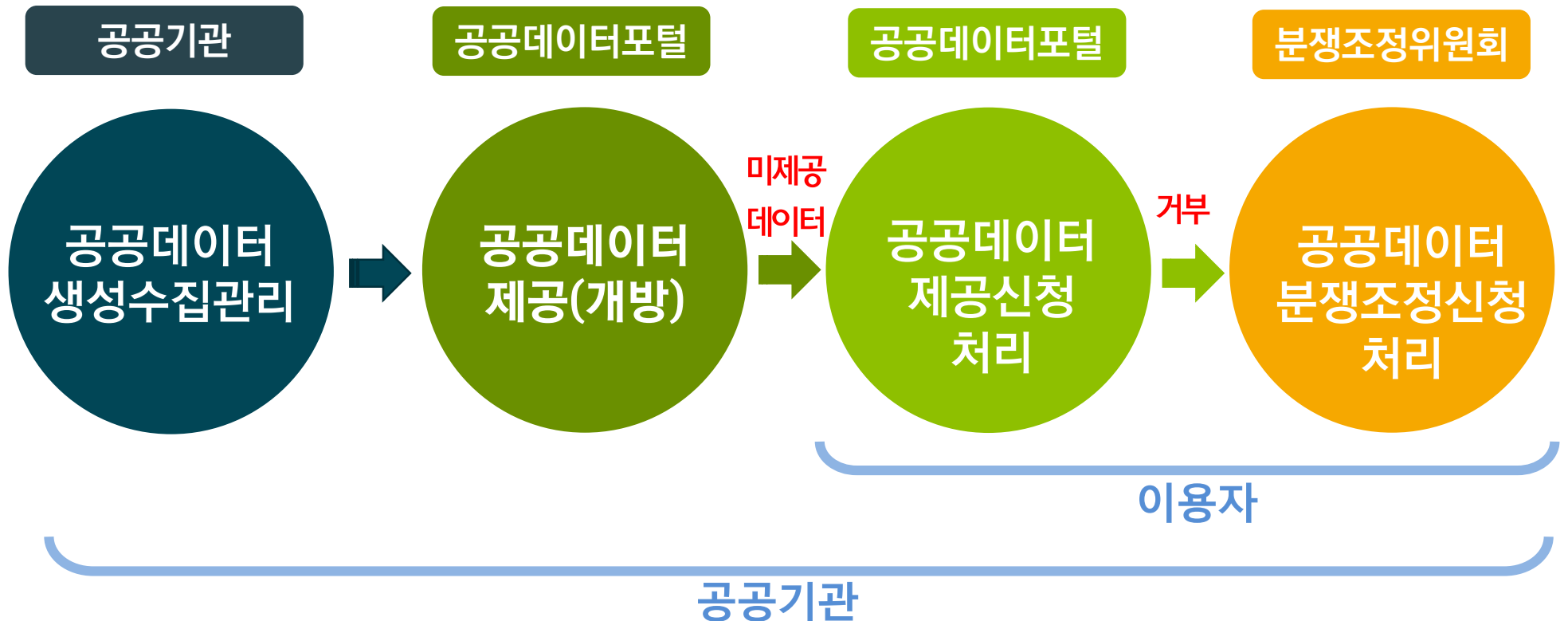
● 공공데이터 유지 관리

- 최신성, 정확성 유지,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과거 데이터 유지

공공데이터제공 관련 기술적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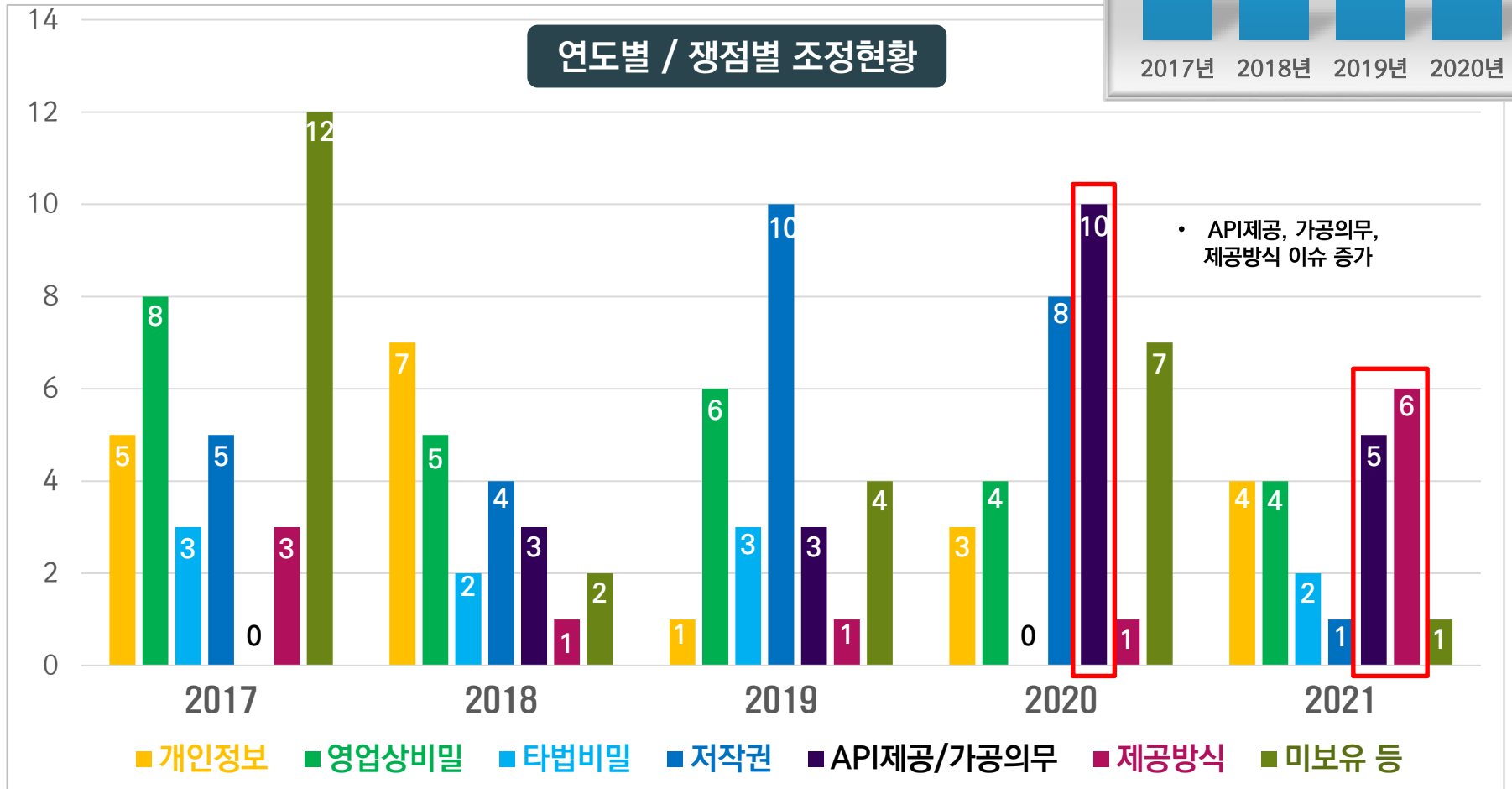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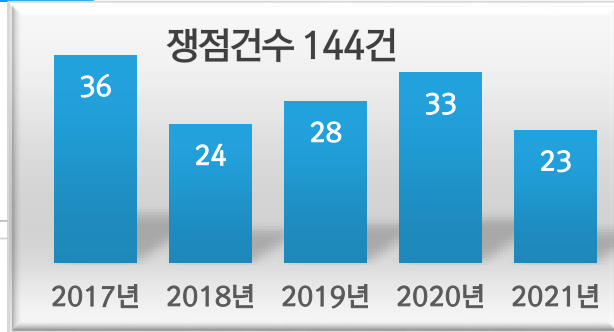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수집관리 및 제공 절차

- 공공데이터 생성수집 과정에서부터 개방, 제공신청처리, 분쟁조정신청처리 절차를 마련



분쟁조정 쟁점

● 분석 대상 : '17~'21.10. 분쟁조정 쟁점기준 144건 (122개 사건)



* 제공방식 : 정보공개대상, 홈페이지공개

공공데이터 제공 기술 및 방식에 대한 이슈

- 데이터 형식 또는 제공방식에 대한 가공의무 없음
 - ✓ 기 제공 중 또는 미제공인 데이터를 신청인이 원하는 항목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통계 형태의 파일 데이터 제공
 - ✓ 실시간 또는 빈번히 갱신되는 데이터를 통계 형태의 파일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공개 대상, 홈페이지에 공개 중인 데이터
 - ✓ 공공데이터임에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라고 거부하는 경우
 - ✓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나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오픈포맷)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의 정보주체 동의 기반 제공방식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별도 인증체계 필요

가공의무에 대한 쟁점

➤ 현황

-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을 근거로 이용자(신청인)가 원하는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공을 거부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거부 유형

- 제공중인 데이터의 세부 항목 추가 또는 변경
 - ✓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미 제공중인 데이터 항목에 필요한 항목이 없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DB)의 Raw Data의 정제 또는 가공이 필요한 경우
 - ✓ 원시데이터를 제공시에는 데이터의 추출, 정제, 가공 등이 필수임에도 이 자체를 가공으로 판단
- 홈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 ✓ 자료로서 정보는 제공하고 있으나 기계판독 어려움 또는 불가
- 정보공개용 자료
 - ✓ 전자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어 공공데이터에 해당함에도 제공의지 부족

가공의무에 대한 쟁점

➤ 제공에 대한 정의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제24조)

-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정보기술 활용 및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 (오픈포맷)

➤ 제공 방향

- 제공대상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비식별처리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의 추출 및 정제, 생성 등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는 반드시 수행해야 함 (법 26조3항에 해당하지 않음)
-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과 기준(오픈포맷)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 예산 확보 등 노력을 통해 제공해야 함
- ❖ 단, 이용자가 이미 제공된 데이터 항목을 바탕으로 분리 또는 결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생성, 변형, 요약, 발췌 등에 대한 가공의무 없음

가공의무에 대한 쟁점

➤ 대법원 판례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의미 및 새로운 가공의 의미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2.11., 선고2009두6001 판결)

가공의무에 대한 쟁점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사례

-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 추출, 정제 등이 용이한 경우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을 전제로 제공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

-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임의가입데이터(2021-009)
- ✓ 소방청 화재발생지 상세주소데이터(2018-012) 등
-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정보(2015-012, 2017-028)

Open API 방식제공에 대한 쟁점

➤ 현황

- 실시간 또는 수시 갱신되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안정성, 예산 등의 사유로 파일 또는 통계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

➤ 문제점

- 데이터의 특성상 실시간 갱신되는 데이터를 API방식이 아닌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개발 등 민간 활용성은 매우 낮음
-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3항을 근거(추가 가공의무 없음)로 실시간 형태의 최신성 있는 데이터 제공에 미온적임

➤ 제공방향

-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국민의 **이용권 보장 및 민간활용을 촉진**하고(제1조 목적 및 제3조 기본원칙) **기계판독 가능형태의 정비 및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토록 함(제24조)에 따라 데이터 특성상 실시간 또는 빈번히 갱신되는 데이터는 **Open API 방식으로 제공**
☞ 개발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제공

Open API 방식제공에 대한 쟁점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사례

- DB화된 데이터, 파일데이터 등을 API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발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향후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API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권고
- 기 제공 API 데이터에 항목 추가하는 경우 포함

- ✓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이력번호(가축사육개체현황) 데이터(2021-001)
- ✓ 국토교통부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 API(2020-012)
-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검색API(2019-014)

정보공개 및 홈페이지 제공 중인 데이터 쟁점

➤ 현황

- 공공데이터임에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라고 거부하거나,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의 게시글 또는 PDF 형태의 서비스로 데이터를 제공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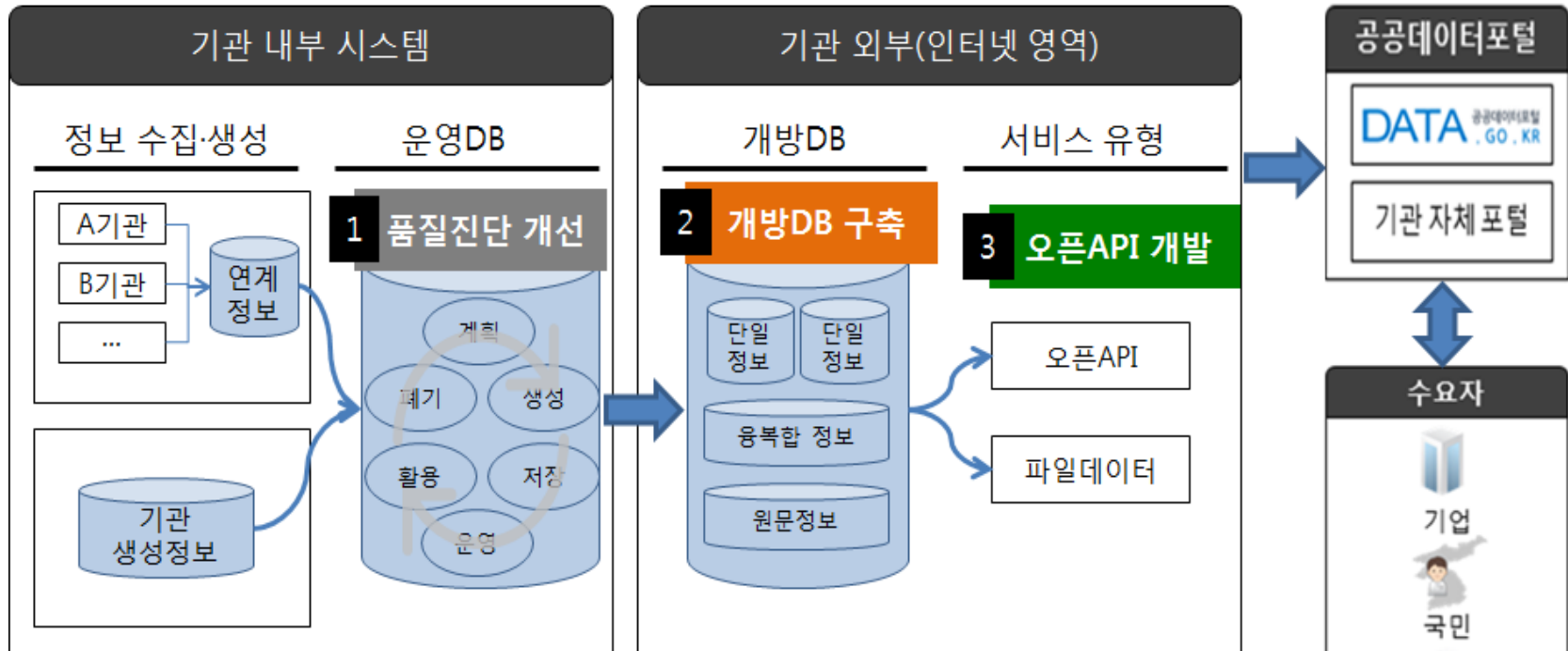
-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원천데이터를 DB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행정데이터 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성 데이터라고 주장하여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침
- 홈페이지에 단순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는 정보는 공공데이터법의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맞지 않아 민간 활용에 어려움 ❖ 230여개 시군구별 데이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수행하는 경우

➤ 제공방향

- 공공데이터법 제2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는 기계판독이 가능형 형태로 다양한 정보 기술 및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 이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 형태로 파일 또는 API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제공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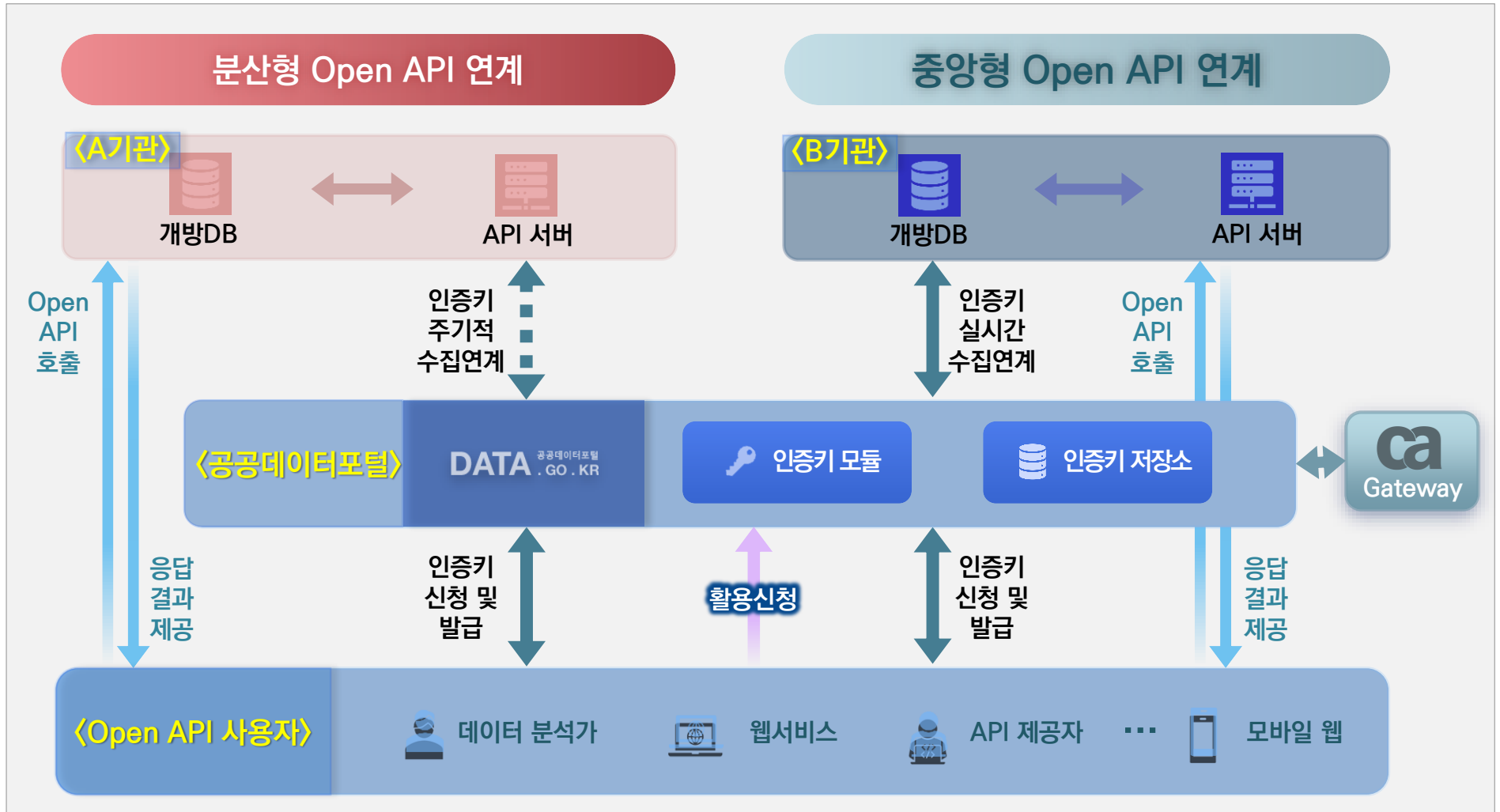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분야	주요 내용
품질진단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데이터 현황 분석 및 개방 데이터 선정 • 데이터 값·형식 등 오류 진단 및 개선 수행
개방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민감정보 제거 및 개방DB설계 •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 및 SW 도입 구축 • 외부 개방을 위한 인터넷 영역내 별도 개방DB 구축
오픈API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성 데이터 개방을 위한 오픈API 설계 및 개발 • 민간에서 쉽게 활용토록 API 가이드 제작 및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Open API 제공 방식

- 공공데이터포털의 Open API 제공 체계에 따라 제공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검색 및 Open API 활용신청 후 이용

오픈API 상세

XML 국토교통부_건축물대장정보 서비스

건축물대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괄표제부, 표제부, 출별개요, 부속지번, 전용공용면적, 오수정화시설, 주택가격, 전용부, 지역지구구역 등 속성정보(대용량 원시DB)

👍 15 🗨 0 📄 관심

OpenAPI 정보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
관리부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API 유형	REST
활용신청	4570
등록	2015-12-24
심의유형	개발단계 : 허용 / 온
비용부과유무	무료
이용허락범위	이용허락범위 제한
참고문서	OpenAPI활용가이드

마이페이지

오픈API

- 개발계정
- 운영계정
- 인증키 발급현황

DATA

나의 문의 >

나의 관심

나의 제공신청

나의 분쟁조정

회원정보 수정 >

개발계정

신청 0건 >

신청중인 단계

- 보류 0건
- 반려 0건

총 22건

국토관리	국토교통부
활용신청 [승인]	국토교통부_건축물면적정보서비스
신청일	2021-11-18 만료예정일 2023-11-18
공공행정	국민권익위원회
활용신청 [승인]	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 재결례 통
신청일	2021-08-20 만료예정일 2023-08-20
국토관리	국토교통부
활용신청 [승인]	국토교통부_건축물대장정보 서비스
신청일	2021-07-30 만료예정일 2023-07-30

URL 복사

활용신청

활용신청 상세기능정보

NO	상세기능	설명	확인	
1	국토교통부_건축물대장 표제부 조회	전국 자치단체의 건축행정정보를 생성된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지번주소 및 세대주소, 주/부속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조, 용도, 지붕구조, 주차대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10000	<input type="checkbox"/>

요청변수(Request Parameter)

항목명	샘플데이터	설명
sigunguCd	11680	행정표준코드
bjdongCd	10300	행정표준코드
platGbCd	0	0:대지 1:산 2:블록
bun	0012	번
ji	0000	지
startDate		YYYYMMDD
endDate		YYYYMMDD
numOfRows	10	페이지당 목록 수
pageNo	1	페이지번호

미리보기

apis.data.go.kr/1613000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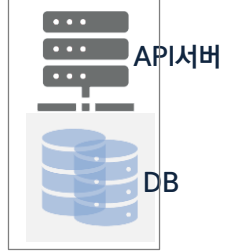
```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 SERVIC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archArea>271.63</archArea>
        <atchBldArea>0</atchBldArea>
        <atchBldCnt>0</atchBldCnt>
        <bcFlat>0</bcFlat>
        <bjdongCd>10300</bjdongCd>
        <bldNm></bldNm>
        <bldlock></bldlock>
        <bun>0012</bun>
        <bylotCnt>0</bylotCnt>
        <crtnDay>20171206</crtnDay>
        <dongNm></dongNm>
        <emgenUseElvtCnt>0</emgenUseElvtCnt>
        <enrEpI>0</enrEpI>
        <enrGrade></enrGrade>
        <enrPlat>0</enrPlat>
        <etcPurps>교육연구시설</etcPurps>
        <etcRoof>아스팔트영글</etcRoof>
        <etcStrct>연와조</etcStrct>
        <fmlyCnt>0</fmlyCnt>
        <gnBldCert>0</gnBldCert>
        <gnBldGrade></gnBldGrade>
        <grndFlrCnt>2</grndFlrCnt>
        <heIt>0</heIt>
        <hldCnt>0</hldCnt>
        <hoCnt>0</hoCnt>
        <indrAutoArea>0</indrAutoArea>
        <indrAutoUcnt>0</indrAutoUcnt>
        <indrMechArea>0</indrMechArea>
      </item>
    </items>
  </body>
</response>

```

Open API 재가공 서비스

공공기관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자



- ❖ API 개발 어려움
- ❖ 시스템 안정성(부하)

원천데이터

파일데이터



DBMS

CUBRID

POWERED BY MySQL

ORACLE

REST/SOAP API

<API>

클라우드 기반 API 제공

원천 메타데이터 저장소

원천데이터 분석

스키마 조회 및 분석

API 명세 분석

스키마 정의 및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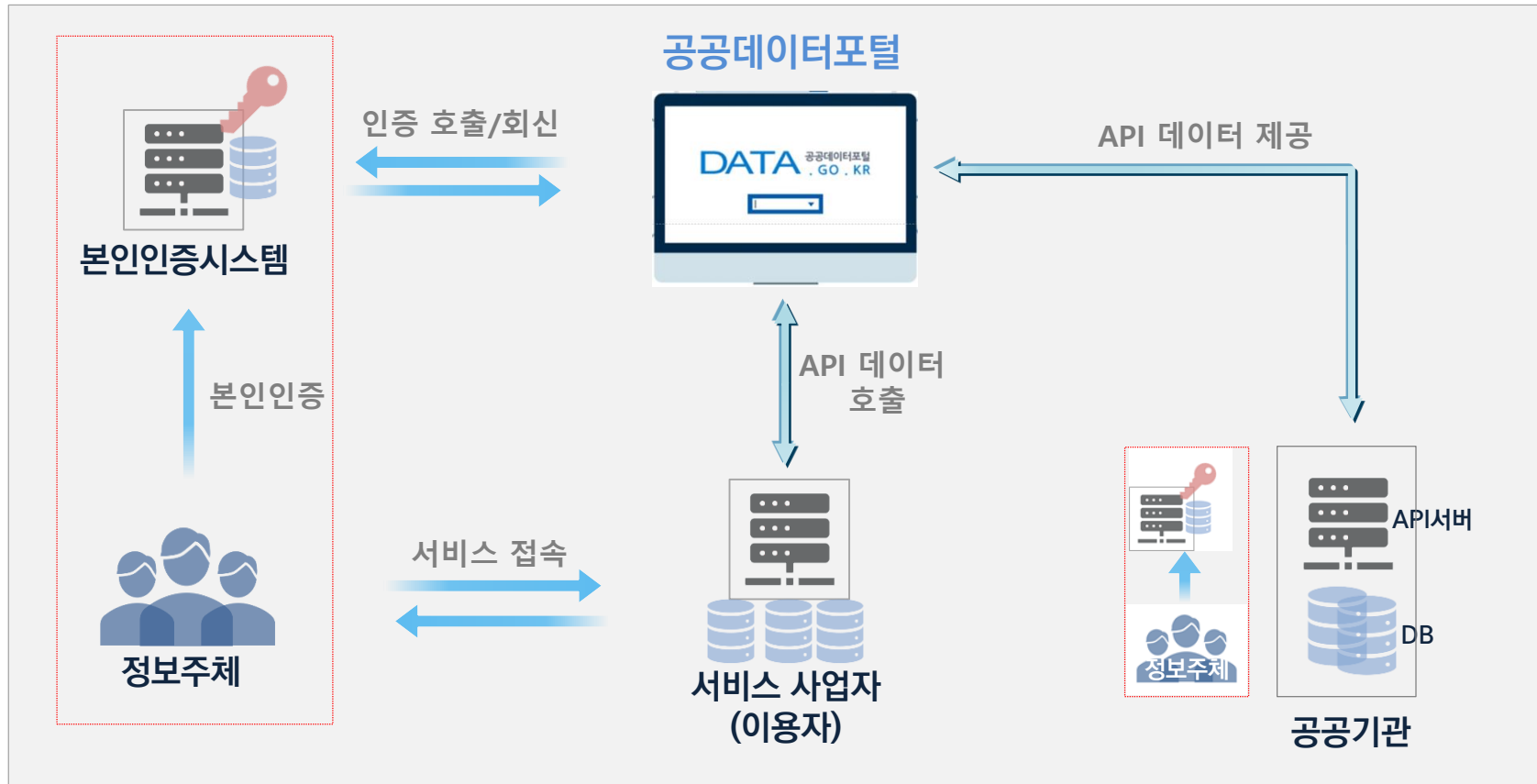
원천데이터 저장소

API Gateway



정보주체 동의 기반 API 제공 방식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한 본인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API 제공



❖ 국토부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 측산물품질평가원 소이력번호 데이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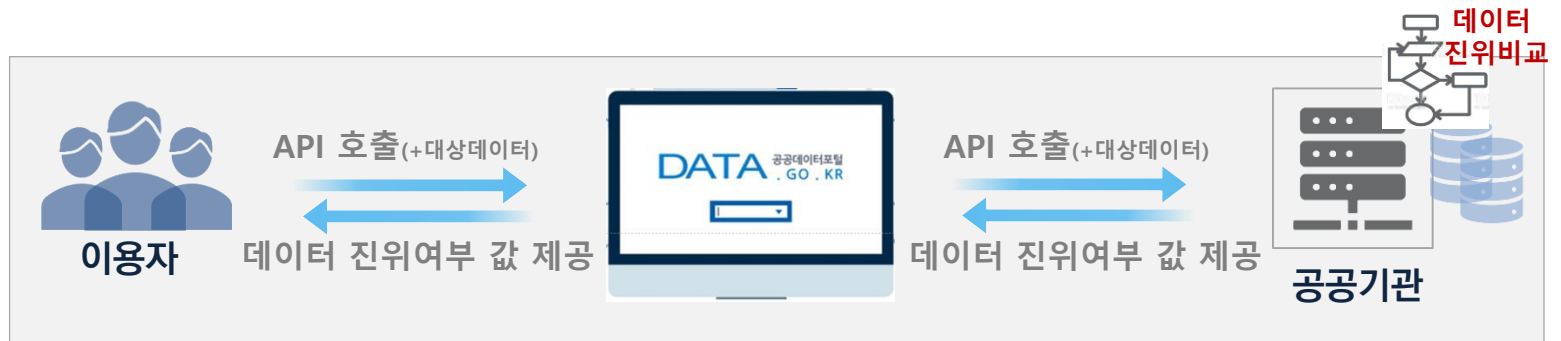
정보진위 확인 방식

- API를 통한 데이터 제공이 아닌 정보의 진위 여부를 회신 제공

➤ 일반적 API 데이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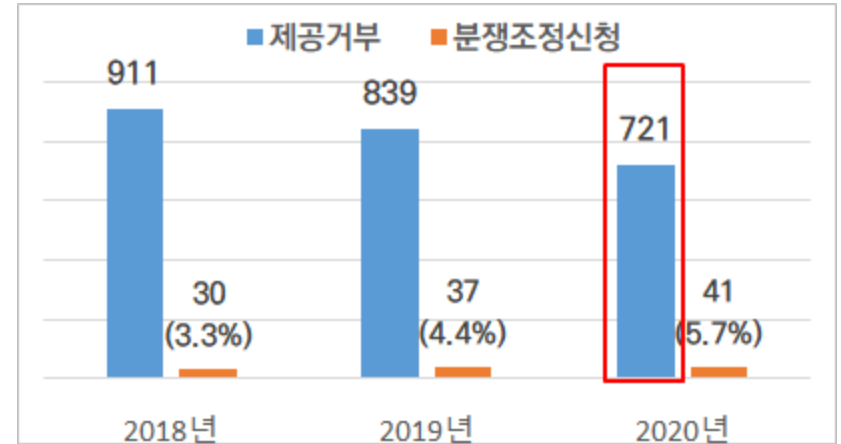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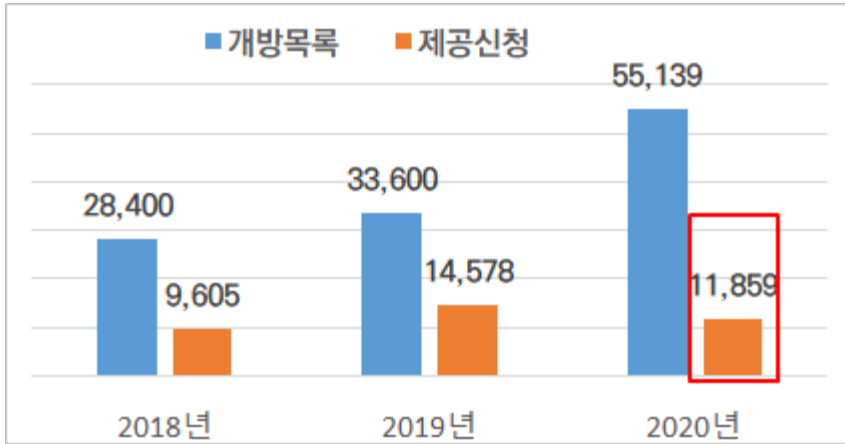


➤ 정보진위 여부를 API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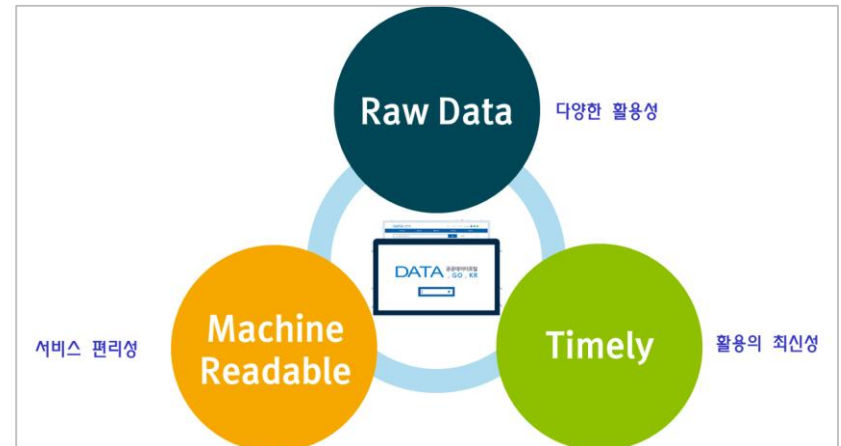
- ❖ 이용자가 API 요청(호출)시, 보유 데이터를 전달하고 해당 기관에서 그 데이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결과 ("Y" or "N") 또는 부가적인 정보를 회신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정보, 코레일 승차권 유효성정보, 국가공인자격정보 등

- 공공데이터 개방 증가에도 제공신청 및 분쟁조정신청은 지속 발생 ...



그 이유는 ?

-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용성, 편리성, 최신성을 고려한 적극적 개방 필요
- 공공데이터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감사합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